

取得課稅型 相續稅 轉換에 관한 研究  
-比較法的方法에 의한 制度設計를 中心으로-

韓國租稅研究院

# 目 次

I. 序 論 .....	7
II. 相續稅의 課稅方法 .....	10
1. 遺產課稅型과 取得課稅型의 概觀 .....	10
2. 遺產課稅型과 取得課稅型의 比較 .....	11
3. 우리나라의 相續稅 課稅方式 .....	14
4. 取得課稅型 導入의 必要性 .....	14
III. 主要國의 相續稅制 概觀 .....	21
1. 日本 .....	21
2. 獨逸 .....	22
IV. 取得課稅型 相續課稅制度로의 轉換에 따른 調整 .....	28
1. 調整의 基本方向 .....	28
2. 納稅義務者 .....	30
3. 納稅地 .....	37
4. 課稅體系 및 稅額計算方式 .....	40
5. 控除制度 .....	51
6. 稅率 .....	65
7. 稅額控除 및 免除 .....	70
8. 申告納付 .....	71
9. 未分割遺產 .....	71
10. 相續稅와 贈與稅의 統合課稅 與否 .....	73
V. 要約 및 政策示唆點 .....	76
參考文獻 .....	82
附 錄 .....	84

# 表 目 次

〈表 II - 1〉 遺産課稅型과 取得課稅型の 比較分析 .....	13
〈表 II - 2〉 課稅類型 選擇基準의 分析結果 .....	19
〈表 III - 1〉 우리나라와 主要國의 相續稅 比較 .....	25
〈表 IV - 1〉 우리나라의 相續稅 賦課現況(1992) .....	53
〈表 IV - 2〉 日本의 相續稅 課稅現況(1991) .....	54
〈表 IV - 3〉 우리나라 相續稅의 各種 控除額 .....	57
〈表 IV - 4〉 우리나라의 主要關聯指標 對比 各種 控除比率 .....	57
〈表 IV - 5〉 日本 相續稅의 各種 控除額 .....	58
〈表 IV - 6〉 日本의 主要關聯指標 對比 各種 控除比率 .....	59
〈表 IV - 7〉 우리나라 相續財産의 種類別 價額 및 構成 .....	62
〈表 IV - 8〉 主要國의 稅率構造 比較 .....	65
〈表 IV - 9〉 相續稅의 稅率體系 改善方案 比較 .....	68
〈表 IV - 10〉 取得課稅型으로 轉換에 따른 相續稅額 比較 .....	69
〈表 IV - 11〉 家口主 年齡別 家口當 月平均 家計收支(1992) .....	74
〈附表 1〉 獨逸의 納稅義務者 分類 .....	84
〈附表 2〉 年度別 死亡者 및 課稅件數比率의 韓·日間 比較 .....	84
〈附表 3〉 우리나라의 GNP, 國稅 및 相續稅 徵收額 .....	85
〈附表 4〉 우리나라 相續稅 控除額의 推移 .....	85
〈附表 5〉 日本의 相續稅 關聯 指標 .....	86
〈附表 6〉 日本 相續稅 年度別 課稅狀況 .....	86
〈附表 7〉 日本의 相續稅 課稅狀況(1991) .....	87
〈附表 8〉 日本 相續稅의 段階別 分布(1991) .....	88
〈附表 9〉 日本의 相續財産 種類別 比率 .....	88

〈附表 10〉 日本 相續・贈與稅의 基礎控除額 推移	89
〈附表 11〉 日本 相續稅의 稅額控除 適用狀況	90
〈附表 12〉 日本의 年度別 贈與稅 課稅現況	90
〈附表 13〉 日本의 贈與稅 課稅現況(1991)	91
〈附表 14〉 獨逸의 相續稅收와 關聯 指標	91
〈附表 15〉 프랑스의 相續稅收와 關聯 指標	92

## 圖 目 次

[圖 IV-1] 우리나라 相續稅 課稅 흐름 .....	40
[圖 IV-2] 日本 相續稅 課稅 흐름 .....	41
[圖 IV-3] 獨逸 相續稅 課稅 흐름 .....	42
[圖 IV-4] 새로운 相續課稅體系의 흐름 .....	43

# I. 序 論

相續稅란 自然人的 사망을 課稅要件으로 하여 그 사망한 自然人的 遺產이 相續·贈與 또는 死因贈與에 의하여 相續人 등에게 無償으로 移轉될 때 부과되는 租稅를 말하며, 富의 集中을 억제하고 所得稅의 기능을 보완한다는 社會政策的 意義를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에 相續稅法이 制定되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社會構造가 農耕社會에서 產業社會로 전환되면서 所得과 富가 一部階層에게 偏重되자 富의 分配問題 특히 富의 世代間 無償移轉 防止問題가 社會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와 같은 問題를 해결하는 유용한 手段의 하나로서 相續課稅制度가 運用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sup>1)</sup>. 相續稅法이 制定된 이래 年度別 死亡者에 대한 相續稅 課稅件數 및 相續稅의 稅收가 GNP 및 國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록 미미한 수준이지만 꾸준히 增加하는 趨勢에 있음이 이를 뒷받침하는데, 구체적으로 1992년의 徵收額을 기준으로 보면 GNP에서 점하는 비율이 0.08%, 國稅에서 점하는 비율이 0.50%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sup>2)</sup>. 그러나 主要 國家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相續課稅의 稅收比重은 여전히 낮아서 富의 再分配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sup>3)</sup>.

---

1) 그러나 그때그때의 事案에 따른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해서 政策當局이 相續稅法을 여러차례에 걸쳐서 改編했지만, 어디까지나 短期的인 措置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相續 財產의 種類가 不動產이 중심이 됨에 따라서, 捕捉하기 쉬운 不動產 중심으로 課稅가 이루어져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附表 2> 및 <附表 3> 참조.

3) <附表 6>, <附表 14> 및 <附表 15> 참조.

現行 遺產課稅型 相續課稅制度는 各 相續人의 持分으로 分할하기 前의 遺產總額을 課稅物件으로 하여 無償移轉者 基準으로 課稅하기 때문에 納稅節次 및 執行은 간편하지만, 應能課稅의 原則과 富의 集中 抑制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取得課稅型인 贈與稅와의 연계도 어렵고 人別控除의 혜택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한다. 특히, 配偶者에 대한 控除規模가 늘어날수록 그 혜택이 자녀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配偶者控除를 확대하기가 어렵다는 問題點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相續人 持分別로 分할된 相續財產을 課稅物件으로 하여 遺產取得者(相續人, 受遺者 등) 기준으로 課稅하는 取得課稅型相續課稅制度로 전환하면 各 相續人은 無償取得한 財產價格에 상응하는 限界稅率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富가 多數人에게 分散移轉되면 될수록 相續稅 總負擔額이 감소되고 少數人에게 집중할수록 總負擔額이 증가되어 經濟的 不均衡 問題의 是正에 유리하다. 아울러 擔稅能力이 遺產의 無償取得者를 기준으로 測定·課稅되므로 應能課稅의 原則에 부합되고, 各種 控除의 혜택이 各 해당자에게 歸屬되어 控除의 效果가 直接的이 된다. 또한 取得課稅型인 現行 贈與稅와 통합하여 과세하면 生前移轉財產과 死亡移轉財產間의 中立性이 유지되어 富의 凍結效果도 완화된 유리한 면이 있게 된다. 그 동안의 급속한 經濟成長과 더불어 표출된 富의 集中 抑制과 公平課稅에 대한 國民의 期望을 고려한다면, 富의 集中 抑制에 효과적이고 應能課稅의 原則에 충실한 取得課稅型 相續課稅制度로의 轉換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중전의 相續稅 研究(李泰魯, 1992; 崔明根, 1990; 韓國租稅研究所, 1989)에서는 相續課稅에 대한 理論的인 面과 遺產課稅型下에서의 問題點에 대한 改善方案이 잘 제시되었으며, 또 일부 研究(崔明根, 1993)에서는 取得課稅型으로의 轉換에 대해서도 상당한 研究이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轉換 方案의 제시에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本稿에서는 取得課稅型 相續課稅制度으로의 轉換에 대비한 구체적인 方案 提示를 도모하고자 한다.

本 研究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第Ⅱ章에서는 相續稅의

課稅方法을 概觀하고 取得課稅型 導入의 必要性을 분석하며, 第Ⅲ章에서는 主要國의 相續稅制를 概觀한다. 第Ⅳ章에서는 取得課稅型 相續稅制로의 전환에 따른 調整方案을 日本 및 獨逸의 相續稅制와의 比較·分析 및 우리나라 相續法의 관련부분의 원용 등을 통해서 도출하며, 마지막으로 第Ⅴ章에서는 本 研究의 結果를 간략히 要約하고 政策的 示唆點을 제시한다.

## II. 相續稅의 課稅方法

### 1. 遺産課稅型과 取得課稅型의 概觀

#### 가. 遺産課稅型 相續稅制

遺産課稅型 相續稅制란 사망자인 被相續人이 남긴 遺産總額의 移轉을 課稅物件으로 하여 無償移轉者 基準으로 課稅하는 方法이므로 資產稅의 性格을 띠고 있다<sup>1)</sup>. 즉 各 相續人의 持分으로 分할하기 前의 遺産總額을 課稅物件으로 하여 無償移轉者 基準으로 課稅하는 方法이다. 따라서 共同相續의 경우에도 이를 各자의 相續分으로 分할하기 前에 分할되지 아니한 遺産總額을 課稅對象(Tax Base)으로 하여 이에 累進構造의 稅率을 적용하게 된다<sup>2)</sup>.

이러한 課稅方法은 被相續人의 일생에 걸친 經濟生活을 清算하여 課稅한다는 것으로 사람이 생존한 동안 축적한 富를 사회에 還元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英美法系의 나라에서 선호하고 있다.

#### 나. 取得課稅型 相續稅制

取得課稅型 相續稅制란 遺産取得者(相續人, 受遺者 등)의 取得財産 價額을 課稅對象(Tax Base)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收益稅的 性格을 띠고 있으며<sup>3)</sup> 相續人·受遺者 등이 여러 사람인 경우 遺産을 먼저

1) 李泰魯, 『租稅法概論』, 租稅通覽社, 1990, p. 287.

2) 崔明根, 『相續課稅論』, 稅經社, 1990, p. 73.

3) 李泰魯, 前掲書, p. 288.

각자의 相續分·遺贈分 등에 따라 분할하여 計算하고 이와 같이 分割·計算된 각자의 몫(지분)에다 所定の 稅率을 적용한다<sup>4)</sup>. 遺產課稅型이 遺產을 각 相續人의 相續分으로 分割하지 아니하고 被相續人을 기준으로 그의 遺產總額에다 소정의 稅率을 적용하여 課稅하는 것과 이 점에서 구별된다.

이러한 課稅方法은 우연한 사실에 의한 財産 또는 富의 取得을 억제하고 그에 대한 課稅를 높임으로써 다른 所得과의 課稅衡平을 맞추는 데 그 意義가 있다.

## 2. 遺產課稅型과 取得課稅型의 比較<sup>5)</sup>

### 가. 遺產課稅型 相續稅

擔稅能力이 無償移轉者를 기준으로 측정·과세되므로, 相續稅의 실질적인 負擔者의 擔稅能力을 충분히 고려하기가 어렵다.

課稅方法을 보면 被相續人의 富가 1人에게 移轉(單獨相續)되거나, 多數人에게 分割되어 移轉(共同相續 및 遺贈)되거나 간에 각자의 相續分으로 분할하기 前 總遺產을 課稅基礎로 하여 累進構造의 稅率을 適用·課稅하므로 遺產이 負擔하는 稅額은 同一하며(遺產의 분할방법에 관계 없이 稅額이 일정하다), 또한 相續稅率의 累進構造下에서의 共同相續의 경우 有產을 적게 承繼하거나 많이 承繼하거나 간에 결과적으로 각자가 適用 받는 限界稅率이 동일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된다. 따라서 應能負擔의 原則에 어긋나 中產階層의 相續課稅 負擔이 상대적으로 過重해지는

4) 崔明根, 前揭書, p. 99.

5) 崔明根(『取得課稅型 相續課稅制度 導入方案에 관한 研究』, pp. 51~53), 李泰魯(前揭書, p. 358), 稅制發展審議委員會 財産課稅制度研究分科委員會(『法改正과 關聯한 相續稅制 補充方案 및 遺產稅를 遺產取得稅制로 改編하는 方案』, pp. 49~51)를 참조 정리함.

결과를 가져온다.

相續稅 稅率構造가 동일하다면, 取得課稅型 相續稅制度下에서보다 遺産課稅型 相續稅制度下에서 稅收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分割 前 有産總額에 課稅하므로 相續稅 行政이 상대적으로 쉽다.

#### 나. 取得課稅型 相續稅

取得課稅型에서는 擔稅能力이 遺産의 無償取得者를 기준으로 測定·課稅되므로 公平한 稅負擔을 기대할 수 있어 應能負擔의 原則에 부합한다.

課稅方法을 보면 共同相續의 경우에는 각자의 相續分으로 分割한 후 각자의 取得遺産(相續分)을 課稅基礎로 하여 累進構造의 稅率을 適用·課稅하므로, 富가 多數人에게 分散 移轉되면 될수록 相續稅 總負擔額이 減少한다(遺産의 分割方法에 의하여 稅額이 달라진다).

各 相續人은 無償取得한 財産價額에 상응하는 限界稅率의 적용을 받아 相續稅를 納付하게 되기 때문에 遺産額이 여러 사람에게 分散 承繼되면 될수록 그 遺産總額이 負擔하는 相續稅 總負擔額은 減少하게 된다. 따라서 遺産課稅型 相續稅制度보다 富의 分散을 誘導하는 기능이 강하다. 또 中産階層의 相續稅 負擔은 상대적으로 取得課稅型이 遺産課稅型에서보다 가벼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相續稅 稅率構造가 동일하다면, 遺産課稅型 相續稅制下에서보다 取得課稅型 相續稅制下에서 稅收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共同相續의 경우 分割되는 遺産額에 대하여 相續人別로 각자에게 相續稅를 賦課 處分해야 하고 또한 相續人 각자의 住所地 管轄稅務署가 取得遺産에 대한 相續稅를 告知·徵收해야 하므로 稅務行政이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稅源을 逸失할 우려가 遺産課稅型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遺産課稅型과 取得課稅型の 長·短點을 比較分析하면 <表 II-1>과 같다.

〈表 II - 1〉 遺產課稅型和 取得課稅型的 比較分析

	課稅方法	長·短點
<p>遺 產 課稅型</p>	<p>① 共同相續財產을 각 相續人의 持分으로 分割하기 前 遺產總額(課稅標準)에 소정의 稅率을 적용하여 稅額 計算.                  ② 稅額을 각 相續人의 持分比率로 配分해서, 納付할 各자의 稅額을 計算.                  ③ 擔稅力을 無償移轉者(被相續人)를 기준으로 測定·課稅.</p>	<p>① 동일한 수준의 稅率에서는 取得課稅型에 비해서 相續稅收가 상대적<u>으로</u> 많음.                  ② 租稅行政이 용이함.                  ③ 富가 1人에게 世襲되거나 多數人에게 分散移轉되거나 租稅의 總負擔額이 同一하게 됨.                  ④ 각 相續人의 富의 無償取得價額의 多寡에 불구하고 같은 수준의 限界稅率이 적용되는 矛盾이 발생함.                  ⑤ 中產階層에 대한 相續稅 負擔이 相對的으로 過重함.                  ⑥ 無償移轉者를 기준으로 課稅되므로 相續稅의 실질적인 負擔者의 擔稅能力의  파악이 곤란함.</p>
<p>取 得 課稅型</p>	<p>① 共同相續財產을 각 相續人의 持分으로 分割한 다음 각 持分額에 해당하는 소정의 稅率을 적용하여 稅額을  계산.                  ② 위와 같이  계산된 稅額이 바로 각 相續人이 納付할 稅額.                  ③ 擔稅力을 無償取得者(相續人, 受遺者 등)를 기준으로 測定·課稅.</p>	<p>① 개인의 擔稅力을  측정하여 合理的인 課稅를 할 수 있음(應能負擔의 原則에  부합).                  ② 富가 多數人에게 分散移轉되면 될수록 相續稅 總負擔額이 감소되어서(富의 分散誘引機能이 내재) 經濟的 不均衡의  시정에  유리함.                  ③ 相續人 各자에게 無償取得한 財產價額에 상응하는 限界稅率 적용이 가능해서, 中產階層에 대한 相續稅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움.                  ④ 동일한 수준의 稅率에서는 遺產課稅型에 비해서 稅收가 감소함.                  ⑤ 相續遺產의 偽裝分割相續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⑥ 租稅行政이 복잡함.</p>

### 3. 우리나라의 相續稅 課稅方式

우리나라의 相續稅 課稅方式은 無償移轉者 基準의 遺產課稅型으로 現行法 第2條 第1項에 규정되어 있다. 相續稅 課稅方式이 遺產稅方式을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大法院 判例로는 1977. 7. 26 宣告, 75누184 判決이 있으며, 이후에도 일관되게 遺產課稅型의 견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sup>6)</sup>.

### 4. 取得課稅型 導入의 必要性

바람직한 相續課稅制度란 다음과 같다<sup>7)</sup>.

첫째, 富의 分散機能이 있어야 한다.

둘째, 應能負擔의 原則이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適正水準의 稅收가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相續稅와 所得稅의 補完과 調和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稅務行政이 용이해야 하고, 家族共同體의 物的基礎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면 相續稅가 取得課稅型으로 轉換되어야 할 必要性을 富의 分散機能, 應能負擔의 原則, 家族共同體의 物的基礎保護, 稅收確保 및 稅務行政의 容易性의 側面에서 分析해 보기로 하자.

---

6) 大法院, 1981. 9. 22 宣告, 80누596 判決; 大法院, 1983. 6. 28 宣告, 82도2421 判決; 大法院, 1984. 3. 27 宣告, 83누710 判決 등.

7) McNulty(崔明根, 『取得課稅型 相續課稅制度 導入方案에 관한 研究』, p. 13. 에서 재인용).

## 가. 課稅類型的 選擇基準

### 1) 應能負擔의 側面

遺產課稅型에서는 被相續人의 富가 1人에게 移轉(單獨相續)되거나, 多數人에게 分割되어 移轉(共同相續 및 遺贈)되거나 간에 각자의 相續分으로 分割하기 前 遺產總額을 課稅對象으로 하여 累進構造의 稅率을 適用·課稅하기 때문에 遺產이 부담하는 稅額은 동일하다. 따라서 相續稅率의 累進構造下에서의 共同相續의 경우 遺產을 적게 承繼하거나 많이 承繼하거나 간에 결과적으로 각자가 적용 받는 限界稅率이 동일하게 되므로 應能負擔의 原則과 부합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取得課稅型에서 共同相續의 경우에는 각자의 相續分으로 分割한 後 각자의 取得遺產(相續分)을 課稅對象으로 하여 그 財産價額에 相應하는 限界稅率의 적용을 받아 相續稅를 납부하므로 應能負擔의 原則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 2) 富의 分散 促進 側面

遺產課稅型은 無償移轉者의 遺產總額을 課稅對象으로 累進構造의 稅率을 적용하기 때문에 單獨相續이든 共同相續이든 간에 總負擔稅額은 같게 되므로, 富의 分散誘引機能이 없다고 할 수 있다.

取得課稅型은 相續人 등 각자가 相續分에 의해서 無償取得한 財産價額에 상응하는 限界稅率의 적용을 받아 相續稅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遺產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서 分散移轉하면 할수록 그 遺產總額이 負擔하는 相續稅 總負擔額은 적어진다. 따라서 取得課稅型은 富를 광범위하게 分散시킬 수 있으므로, 富의 分散誘引機能이 遺產課稅型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 3) 家族共同體의 物的基礎 保護 側面

적정한 相續課稅가 富의 分散을 위하여 필요하기는 하지만 社會의 基

礎共同體인 家庭을 파괴해서는 안되므로, 相續課稅에 있어서는 家庭的 物的 基礎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고려된 各種 控除制度가 있다.

家族共同體의 物的基礎의 保護라는 目的과 相續課稅의 類型은 밀접한 相關關係가 없지만, 各種 控除의 差減方法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즉, 無償移轉者 기준으로 課稅하는 遺產課稅型에서는 각자의 相續分으로 분할하기 前 總遺產에서 控除額을 差減 計算하기 때문에 그 控除效果의 歸屬者가 불분명하다. 즉 控除效果가 間接적이다. 遺產取得者의 取得財產價額을 課稅對象으로 하여 課稅하는 取得課稅型에서는 각자의 相續分으로 分割한 후 각자가 取得하는 相續分에서 控除額을 차감 계산하기 때문에 그 控除效果의 歸屬者가 분명하다. 즉 控除效果가 직접적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보면 取得者 기준으로 相續課稅하는 取得課稅型이 家族共同體의 物的基礎의 保護에 좀더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 保護의 정도는 控除價額의 多寡 및 控除의 種類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相續課稅의 유형과는 相關關係가 적다고 할 수 있다.

#### 4) 稅收確保의 側面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稅收寄與도와 課稅類型과의 관계는 稅率의 높이와 累進構造가 동일하면 遺產課稅型이 取得課稅型에 비해 稅收生産能力이 더 크다고 한다. 이는 分割 前 遺產總額에다 累進稅率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取得課稅型에서도 單獨相續의 경우에는 遺產課稅型과 동일한 稅收가 들어오겠지만, 共同相續의 경우에는 遺產課稅型에 비해 稅收가 減少할 것이다. 특히 取得課稅型은 富의 分散機能이 遺產課稅型보다 우수하지만 富의 광범위한 分散에는 節稅效果가 있기에 遺產課稅型보다 稅收가 감소할 것은 분명하다.

특히 遺產課稅型과 取得課稅型은 課稅體系가 相異하므로 같은 稅率體系를 적용할 수는 없다. 만약 각자의 相續分으로 분할해서 각자가 取得한 相續財產을 課稅基礎로 하는 取得課稅型으로 轉換할 때에 相續分으로 分割하기 前의 遺產總額을 課稅基礎로 하는 遺產課稅型的 稅率體系

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稅收가 감소할 것이다. 즉 現行 遺產課稅型下에서는 相續價額의 多寡에 관계없이 각 相續人은 동일한 限界稅率의 적용을 받게 되나, 取得課稅型下에서는 각 相續人이 無償取得한 財產價額에 相應하는 限界稅率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取得課稅型으로 轉換時에 稅收의 減少를 방지하려면 限界稅率을 遺產課稅型과 같게 하거나 높여야 하고 또한 課稅區間을 좁게 조정해야 하는데, 이는 現行 稅制改編의 방향과 相衝된다. 따라서 取得課稅型으로 轉換時에는 稅收確保의 어려움 또는 相續稅의 機能 弱化가 예상된다.

### 5) 租稅行政의 難易度 側面

遺產課稅型은 管轄 課稅官廳이 被相續人 한 사람의 相續稅 申告書를 調査·確認하면 되기 때문에 稅務行政이 간편하며, 相續人이나 受贈者, 受遺者의 數, 遺產의 分割持分 여하에 관계없이 租稅 總負擔額이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遺產의 僞裝分割申告가 거의 없다.

取得課稅型에서는 管轄 稅務官廳이 共同相續人·受贈人·受遺者의 數만큼의 相續稅 申告書를 調査·確認해야 하므로 稅務行政이 복잡하다. 뿐만 아니라 相續人 등의 數가 많아서 相續分이 작게 分割되면 될수록 總租稅負擔額이 減少하므로 遺產의 僞裝分割이 가속화될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取得課稅型은 有產課稅型에 비해 조세행정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나. 우리에게 적합한 課稅類型

應能負擔의 側面에서 보면, 각자의 相續分으로 분할한 후 각자의 取得 遺產(相續分)을 과세베이스로 하여 그 財產價額에 相應하는 限界稅率의 적용을 받아 相續稅를 納付하는 取得課稅型이 應能負擔의 原則과 부합된다.

富의 分散 促進 側面에서 보면, 無償移轉者가 그의 자유로운 意思決定

에 의해 富를 광범위하게 分散시킬 수 있는 取得課稅型이 富의 分散誘引 機能面에서 遺產課稅型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家族共同體의 物的基礎 保護 側面에서 보면, 控除效果가 각 相續人의 相續分에 직접 歸屬하는 取得課稅型이 控除效果가 간접적인 遺產課稅型보다 좀더 바람직한 制度라고 할 수 있으나, 保護의 정도는 控除價額의 多寡 및 控除의 種類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相續課稅의 類型과는 相關關係가 적다고 할 수 있다.

稅收寄與度の 側面에서 보면, 稅收增大 效果가 큰 遺產課稅型的 타당성이 인정된다. 특히 現行 遺產課稅型下에서는 相續價額의 多寡에 관계 없이 각 相續人에게는 동일한 限界稅率이 적용되나, 取得課稅型下에서는 각 相續人이 無償取得한 財產價額에 相應하는 限界稅率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取得課稅型으로 轉換時에 稅收의 減少를 방지하려면 限界稅率을 遺產課稅型과 같게 하거나 높여야 하고 또한 課稅區間을 좁게 調整해야 하는데, 이는 現行 稅制改編의 方向과 相衝된다. 따라서 取得課稅型으로 轉換時에는 稅收確保의 어려움 또는 相續稅의 機能 弱화가 예상된다.

租稅行政의 難易度 側面에서 보면, 租稅行政이 과거보다는 進一步해서<sup>8)</sup> 取得課稅型을 뒷받침할 수 있는 段階에 접어들었다는 見解도 있다<sup>9)</sup>. 그러나 租稅行政이 進一步했다지만 取得課稅型的 施行時에는 稅務行政이 복잡해지고 行政需要가 크게 增大됨은 부인할 수 없으며, 또한 相續稅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위의 내용을 表로 정리하면 다음의 <表 II -2>와 같다.

- 
- 8) 綜合所得稅 및 附加價値稅의 행정경력 이 이미 10여년을 넘어서 상당한 經驗 축적이 이루어졌고, 특히 상당 범위의 課稅행정에서는 電算體系가 구축되어서 活用되고 있다.
- 9) 崔明根은 일본이 遺產課稅型에서 取得課稅型으로 전환하던 당시의 社會環境보다 현재의 우리 社會環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崔明根, 前掲書, p. 58).

〈表 II - 2〉 課稅類型 選擇基準의 分析結果

	應能負擔의 側面	富의 分散 側面	物的基礎 保護側面	稅收寄與 側面	租稅行政 側面
遺產課稅型	-	-	0	+	+
取得課稅型	+	+	0	-	-

註: ' +'은 肯定的인 效果가 나타난 경우이고, ' - '은 否定的인 效果가 나타난 경우이며, ' 0 '은 效果가 分明하지 않은 경우이다.

위의 分析 結果를 綜合해 보면 取得課稅型으로의 轉換하는 問題는 政策의 比重(課稅目的)이 어디에 있는냐에 따라서 決定되어야 할 性質의 問題이다. 政策方向이 富의 分散 促進과 稅負擔의 衡平性 提高에 있다면 取得課稅型을 채택해야 할 것이며, 稅收確保와 租稅行政의 便易性을 도 모한다면 遺產課稅型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의 급속한 經濟成長과 더불어 提起되어 온 富의 集中 抑制와 公平課稅에 대한 國民의 輿望과 富의 分散 促進과 應能負擔의 實現이라는 租稅政策을 고려한다면, 取得課稅型이 보다 바람직한 課稅類型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現在의 相續慣行, 相續登記制度 및 名義信託 制度 등에 의해서 遺產의 偽裝分割相續이 가능하다는 점과 取得課稅型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相續稅法 전체를 개편해야 하고 相續稅 關聯 稅務 行政을 뒷받침할 電算網의 完備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現 段階에서 「純粹取得課稅型」으로 轉換時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비록 稅務行政上의 負擔이 조금 더 增加한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現 段階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어려움을 방지할 수 있는 遺產課稅型과 取得課稅型의 折衷型인 「法定相續分 課稅方式에 의한 取得課稅型」<sup>10)</sup>을 우선 채택

10) 「法定相續分 課稅方式에 의한 取得課稅型」이란 課稅되는 遺產總額, 法定相續人의 數, 法定相續分이라는 객觀적 수치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日本에서 시행중 이다. 이 類型은 應能負擔의 側面과 富의 分散 促進 側面에서는 遺產課稅型보다는

하고, 향후 相續慣行 및 相續登記制度가 합리화되고 稅務行政이 개선되면(특히 電算網이 완비되어서 相續人 및 受贈者 전체의 관리가 가능할 때) 「純粹取得課稅型」으로 轉換해야 할 것이다.

---

우수하지만 純粹取得課稅型보다는 뒤지며, 稅收確保 側面 및 租稅行政側面에서는 純粹取得課稅型보다는 우수하지만 遺產課稅型보다는 뒤진다. 따라서 僞裝分割問題가 해결되고, 稅務行政이 뒷받침될 때까지는 「法定相續分 課稅方式에 의한 取得課稅型」을 시행해야 될 것이다.

### Ⅲ. 主要國의 相續稅制 概觀<sup>1)</sup>

#### 1. 日 本

##### 가. 課稅方式

「슈프」(Shoup)의 稅制改革報告書를 기초로 해서 1950년에 遺産課稅型에서 取得課稅型으로 개편했다. 取得課稅型을 기본으로 하여 相續稅의 總額을 法定相續人의 數와 法定相續分에 의하여 算出하여 各人의 課稅價格에 따라 課稅하는 方式(法定相續分 課稅方式)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取得課稅型임에도 불구하고 遺産의 分割方法에 의하여 稅額을 增減하는 것이 原則적으로 불가능하다.

##### 나. 相續稅 課稅價格

遺産總額에서 非課稅財産과 被相續人의 債務額 및 葬禮費用을 차감하고, 相續開始 前 3年 이내 贈與 받은 財産價額을 합하여 課稅價格을 산출한다.

##### 다. 稅 率

13段階의 超過累進稅率構造이며, 최저 10%에서 최고 70%까지이다.

---

1) 자세한 내용은 <表 Ⅲ-1>을 참조.

## 라. 控除制度

基礎控除 및 人的控除(配偶者稅額 輕減, 未成年者控除 및 障礙者控除)制度가 있다.

## 마. 生前贈與의 調整

贈與時마다 贈與稅가 課稅되며 특히 그 이전에 지불한 贈與稅의 調整은 되지 않으나 相續開始 前 3年 이내의 贈與는 相續稅의 對象이 되는 동시에 納付한 贈與稅額은 稅額控除된다. 그러나 生前移轉을 억제하기 위해 生前移轉에 대해 높은 稅率을 적용하고 있다. 一生累積課稅方式이 「슈프」稅制로서 도입된 일이 있었으나 집행상의 곤란으로 1953년에 폐지되었다.

## 바. 配偶者의 취급

配偶者의 相續에 대하여는 法定相續分에 대한 稅額을 控除하는 稅額控除가 인정되고 있다.

## 2. 獨 逸<sup>2)</sup>

### 가. 課稅方式

相續人 각자가 얻은 富의 增加分<sup>3)</sup>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다 公平한 課

2) <附表 14>의 獨逸의 相續稅收와 關聯 指標 참조.

3) 富의 增加란 金錢으로 평가되는 資產의 增加로서 稅法的인 價値에 의해 평가된다.

稅를 할 수 있기 때문에 取得課稅型을 채택했다. 이 方式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取得財產價額에서 각각 控除額을 差減해서 그 效果가 직접적이 되도록 하고 있다.

#### 나. 相續稅 課稅價額

遺産總額에서 非課稅 財產, 被相續人의 債務 및 葬禮費用 등을 差減하고 다시 相續 開始 前 10年이내의 贈與 받은 財產價額을 합하고 控除額을 차감해서 算定한다.

#### 다. 稅 率

25段階의 單純累進稅率構造이며<sup>4)</sup>, 最低 3(20)%에서 最高 35(70)%까지이다.

#### 라. 控除制度

基礎控除, 配偶者特別配慮控除 및 子女特別配慮控除가 있으며, 課稅價格(課稅標準)을 算出하는 과정에서 각종 控除가 適用된다.

#### 마. 生前贈與의 調整

贈與稅와 相續稅의 累積課稅方式을 취하고 있다. 즉 相續稅의 稅額計算 過程에서 과거 10年間 동일인의 相續·贈與額을 全額 課稅對象에 算

---

4) 單純累進稅率을 취하고 있어서, 課稅標準이 稅率階級別 課稅標準(tax bracket)을 넘어설 때마다 稅額이 급격히 上昇하게 된다. 이것을 調整하기 위하여 일정한 措置가 강구되어 있다.

入하여 稅額을 算出한 後에, 과거 10年間의 同一人에의 贈與에 대한 贈與稅額을 稅額控除하여 相續稅의 納付稅額을 결정하고 있다. 이것은 生前贈與에 의한 相續稅 부담의 回避 防止를 목적으로 한 조치이다.

#### 바. 配偶者의 取扱

配偶者의 相續에 대하여는 일정한 價額控除를 인정하고 있다.

〈表 Ⅲ - 1〉 우리나라와 主要國의 相續稅 比較

	우리나라	日本	獨逸
① 課稅體系	- 遺產課稅型 ○ 遺產總額에서 일괄 控除 後에 稅率適用	- 取得課稅型 ○ 遺產總額에서 基礎 控除 後 相續人別 法 定相續分을 基礎로 각각 稅額計算 後 合 計額을 實際相續比 率로  안分,  각각 稅 額控除	- 取得課稅型 ○ 遺產總額에서  각각 控除額 差減 後 稅率 을 適用
② 納稅義務者	- 相續人 · 受遺者 ○ 被相續人이 國內에 住所를 둔 경우	- 相續人 · 受遺者 ○ 取得당시 法施行地 內에 住所를 둔 자	- 相續人 · 受遺者 (4분류) ○ 被相續人 또는 相續 人이 內國人인 경우
○ 無制限納稅			
○ 制限納稅	○ 被相續人이 國內에 住所를 두지 아니한 경우	○ 取得당시 法施行地 內에 住所를 두지 아 니한 자	○ 被相續人 · 相續人 모든 內國人이 아닌 경우
○ 連滯納付義務	○  각자가 取得한 財產 의 占有比率에 따라, 取得한 財產價額이 限度	○  각자가 取得한 財產 價額 限度 內에서	○ 連帶納付義務 없음
※ 法定相續分			
01順位	○ 配偶者(1.5), 直系卑屬( 각 1)	○ 配偶者(2), 直系卑屬( 합 1)	○ 配偶者(1) 直系卑屬( 합 1)
02順位	○ 配偶者(1.5), 直系尊屬( 각 1)	○ 配偶者(1), 直系卑屬( 합 1)	○ 配偶者(3) 直系卑屬( 합 1)
03順位	○ 兄弟姊妹	○ 配偶者(3), 兄弟姊妹( 합 1)	
04順位	○ 4寸 이내 傍系血族		
③ 相續稅課稅價額	○ 遺產總額+5年(3年) 以內 贈與分-債務· 葬禮費-不算入財產	○ 遺產總額+3年 이내 受贈分-債務·葬禮 費-非課稅財產	○ 遺產總額+10年 以內 受贈分-債務· 葬禮費-非課稅

〈表 III-1〉의 계속

	우리나라	日本	獨逸
④ 控除制度	一 課稅價額 一括控除	一 각자 稅額控除 (基礎控除는 課稅價額控除)	一 각자 課稅價額에서 控除
○ 基礎控除	○ 1億원	○ 4,800萬円+(950萬円×法定相續人數)	—
○ 人的控除			
· 配偶者	· 1億+(結婚年數×1,200萬원)	· 法定相續分과 8,000萬円 중 큰 金額 相當稅額	· 25萬DM(相續時 25萬DM 特別控除)
· 子女	· 1人當 2,000萬원 (2人)		· 9萬DM(相續時 年齡別 1萬~5萬DM 特別控除)
· 未成年者 (障者)	· 300萬원×20歲 (75歲)까지 年數	· 6萬円×20歲(70歲)까지 年數	—
· 年老者	· 1人當 3,000萬원	—	—
· 其他		—	· 3千DM~5萬DM
○ 物的控除			
· 住宅	1億원	—	—
· 農地			
· 家業			
· 山林			
· 山林	· 全額		
⑤ 稅額加算	一 世代생략 相續時: 20% 加算	一 配偶者 · 1寸外의 直系 卑屬 相續時: 20% 加算	一 納稅義務者別 控除 額 · 稅率 差等 適用
⑥ 稅率	一 5段階 超過累進	一 13段階 超過累進	一 25段階 單純累進 (差等)
○ 最低	○ 5,000萬원 以下 10%	○ 700萬円 以下 10%	○ 5萬DM 以下 3%(20%)
○ 最高	○ 10億원 超過 50%	○ 10億円 超過 70%	○ 1億DM 超過 35%(70%)
⑦ 申告納付			
○ 申告期限	○ 6個月	○ 1995년 12월까지 점차 延長 (1996년 이후 10個月)	○ 3個月
○ 所管 稅務署	○ 被相續人 住所地 稅務署	○ 被相續人 住所地 稅務署(附則)	○ 管轄稅務署

〈表 Ⅲ-1〉의 계속

	우리나라	日本	獨逸
⑧ 未分割 遺産			
○未分割時		○法定相續分에 따라 取得한 것으로 간주	○分割時까지 遺産은 納稅義務 擔保
○追後 分割時		○更正 前까지 修正申 告書 提出, 分割 後 4月 이내 更正請求 가능	
⑨ 課稅捕脫			
○正常 申告時	○10年	○3年	○4年
○無申告時	○10年	○5年	○重過失 5年
○租稅脫稅	○10年	○7年	○10年

## Ⅳ. 取得課稅型 相續課稅制度로의 轉換에 따른 調整

### 1. 調整의 基本方向

取得課稅型(특히 純粹取得課稅型)으로 轉換時에는 첫째, 現在의 相續慣行<sup>1)</sup>, 相續登記制度<sup>2)</sup> 및 名義信託制度<sup>3)</sup> 등을 改善하여 遺産의 偽

- 1) 예를 들면, 相續財産의 分割과 被相續人의 負債에 대한 辨濟는 相續開始 後 상당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짐이 현재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에 따라 課稅官廳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事後管理를 해야 하는데 현행 세무행정 집행체제 측면에서 보면 어려움이 많다. 특히, 動産(金融資産 등)에 대한 財産分割 여부 확인은 실무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協議分割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共同相續人이 相續財産을 協議分割함에 있어서 共同相續人 중 1인이 자기의 法定相續分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同 超過取得分에 대하여 贈與稅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大法院 判例(大法院 1986. 11. 25 宣告, 86누505 판결 등)와 相續稅法 基本通則(93-2... 29-2)은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共同相續人間의 法定持分에 따른 相續登記를 한 후에 協議分割을 원인으로 하는 更正登記를 했을 시에도 贈與稅가 부과되지 않는다(大法院判例는 協議分割에 의하여 共同相續人 중 1인이 고유의 相續分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相續開始 當時에 被相續人으로부터 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이것은 協議分割을 통한 財産의 偽裝分割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相續稅法 第32條의 2 第1項은 第3者 名義로 登記 등을 한 財産은 實質所有者가 그 名義者에게 贈與한 것으로 擬制하고 있다. 그러나 憲法裁判所의 결정(1989. 7. 21 宣告, 89헌마38 결정), 大法院 判例의 취지 및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의 제정 등의 영향으로 相續稅法 第32條의 2 第1項 但書에서는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第7條 第2項에 의하여 타인의 名義를 빌려 所有權 移轉登記를 한 경우 및 租稅回避目的 없이 타인의 名義를 빌려 登記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贈與擬制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登記公務員의 實質審査權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우리나라 不動産登記體制 아래서 재산의 實質所有者가 자기의 재산을 第3者 名義로 分散함으로써 상속세 등의 租稅負擔을 부당하게 回避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立法政策의 目的에 따라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租稅回避目的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裝分割相續을 防止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稅務行政이 완전히 電算化되어서 相續稅 關聯 行政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前提條件이 충족되어야만 그 轉換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前提條件이 충족된 後에 取得課稅型으로 轉換하면서 그 課稅體系를 설계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課稅目的(基本趣旨) 중 어디에 重點을 둘지 명확히 결정한 후 課稅體系를 설계해야 한다.

첫째, 富의 集中 抑制을 도모한다(日本).

둘째, 家族共同體의 物的基礎保護를 도모한다(獨逸).

셋째, 稅負擔의 平衡性 提高를 도모한다.

取得課稅型은 遺產課稅型보다는 富의 集中 抑制 및 稅負擔의 平衡性 提高에 보다 더 충실한 과세유형이므로 여기에 重點을 두고 課稅體系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現 段階에서는 取得課稅型으로 전환하고자 해도 前提條件의 충족이 미흡해서 「純粹取得課稅型」으로 轉換時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비록 稅務行政上의 부담이 조금 더 증가한다는 問題點이 있지만 現 段階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防止할 수 있는 遺產課稅型과 取得課稅型의 折衷型인 「法定相續分 課稅方式에 의한 取得課稅型」으로 먼저 轉換하고, 後 相續 慣行 및 相續登記制度 등이 改善되고 稅務行政이 뒷받침될 때(특히 電算網이 完備되어서 相續人 및 受贈者 전체의 管理가 가능할 때) 「純粹取得課稅型」으로 轉換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法定相續分 課稅方式에 의한 取得課稅型」으로 轉換時에 檢討해야 할 事項을 分析하고자 한다.

---

이 그 정의자에게 있지만(大法院 1990. 7. 24 선고, 89누8224 판결), 現행 관행상으로는 그 판단에 어려움이 많아서 尙장분할상속의 여지가 계속 존재하게 된다.

## 2. 納稅義務者

### 가. 納稅義務者의 範圍

租稅는 그 時代의 背景, 國民性, 經濟構造나 徵稅技術의 水準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국의 租稅는 서로 상이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各國의 納稅義務者 範圍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自然人인 相續人과 受遺者<sup>4)</sup>가 納稅義務者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擬制納稅義務者<sup>5)</sup>가 인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相續·遺贈에 의하여 財産을 취득하는 者 및 死因贈與에 의하여 財産을 取得하는 者(相續人·受遺者)가 納稅義務者가 되며, 法人格 없는 社團·財團도 個人으로 보아 納稅義務者가 된다(즉 擬制納稅義務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自然人, 胎兒, 法人格 없는 社團·財團 및 非營利 法人 등이 納稅義務者가 된다.

日本에서는 相續·遺贈에 의하여 財産을 취득하는 者 및 死因贈與에 의하여 財産을 취득하는 者(相續人·受遺者)가 納稅義務者가 되며, 法人格 없는 社團 또는 法人, 公益法人 등도 個人으로 보아 納稅義務者가 된다(즉 擬制納稅義務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個人(自然人), 法人格 없는 社團 또는 法人, 公益法人 등이 納稅義務者가 된다.

獨逸에서는 相續의 경우에는 相續人이, 贈與의 경우에는 受贈者가, 同時出捐의 경우에는 出捐을 실행할 義務를 갖는 者가, 家族財團·社團設立의 경우에는 同 財團 또는 同 社團이 納稅義務者가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自然人, 家族財團·社團, 保險事業者 등(즉 擬制納稅義務者)이 納

4) 遺贈에 의하여 利益을 받는 者를 말하며, 民法에서는 受贈者라고 표시한다. 贈與에 의하여 利益을 받는 者도 受贈者라 한다.

5) 個人으로 擬制해서 納稅義務를 지우는 것으로 예를 들면 推定相續人(韓國), 人格 없는 社團·財團(韓·日), 相續財産管理人(韓國·獨逸), 保險事業者(獨逸) 등이 있다.

稅義務者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胎兒를 보호할 法的 必要性에서 民法에 保護 規定을 두고 있어서 胎兒는 相續順位에 관하여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6)</sup>. 이에 따라 胎兒는 自然人이 아니면서도 相續에 있어서는 自然인과 같은 權利義務를 取得하므로 相續稅의 納稅義務가 있으며, 또한 胎兒에게 相續이 된 경우에는 그 胎兒가 出生한 때에 相續으로 인한 被相續人의 納稅義務가 승계된다<sup>7)</sup>. 日本에서도 胎兒가 살아서 출생하면 相續權이 인정되고 相續稅의 納稅義務가 있게 된다<sup>8)</sup>.

日本에서는 自然人인 個人 이외의 者에게 재산을 遺贈하는 경우에 相續稅 負擔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法人格 없는 社團 또는 財團, 公益法人도 個人으로 간주하여 納稅義務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公益法人에게 納稅義務가 부과된다고 하지만, 公益事業用으로 出捐하는 財產에 대해서는 非課稅하고 있으므로<sup>9)</sup> 우리나라와 같다고 할 수 있다.

日本과 獨逸에서는 納稅義務者를 被相續人 또는 贈與者와의 親族關係의 遠近에 따라 分類해서 몇 가지 差等을 두고 있다. 즉, 日本에서는 財產의 取得者가 被相續人의 1等親<sup>10)</sup> 外的 者인 경우에는 그 者의 稅額은 20% 增額된다. 다만 그 者의 課稅價格의 70%가 限界值이다. 獨逸에서는 納稅義務者를 被相續人 또는 贈與者와의 身分上 關係에 따라서 分類한 것이 특징인데<sup>11)</sup>, 第1類에서 第3類는 親族關係를 기준으로 가까운 順序로부터 분류하고, 第4類는 親族關係가 없는 者를 安배하고 있다 (<附表 1> 參照). 各 分類別로 적용되는 一般控除額과 稅率에는 차이가

6) (韓國) 民法 第1000條 第3項.

7) (韓國) 國稅基本法 基本通則 3-2-07...24.

8) (日本) 相續稅基本通則 27의 6.

9) (日本) 相續稅法 第12條 第3號 참조.

10) 1等親血族이란 1寸인 血族 즉 父母와 子를 말한다.

11) (獨逸) 相續·贈與稅法 第15條 第1項.

있다<sup>12)</sup>.

小結 : 각국의 時代的인 狀況이나 歷史의 背景, 經濟構造 또는 徵稅技術의 水準에 따라서 納稅義務者의 범위에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래에 取得課稅型으로 轉換時에는 現行法의 골격을 유지해서 相續·遺贈에 의하여 財産을 取得하는 者, 死因贈與에 의하여 財産을 取得하는 者 및 法人格 없는 社團·財團 등에게 納稅義務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日本과 獨逸처럼 納稅義務者를 被相續人 또는 贈與者와의 親族關係의 遠近에 따라서 몇 가지 差等을 두는 方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것은 應能負擔의 原則과 富의 分散目的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導入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된다<sup>13)</sup>.

#### 나. 無制限納稅義務와 制限納稅義務의 區分

納稅義務의 範圍은 無制限納稅義務인가 制限納稅義務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나라<sup>14)</sup>에서는 遺產課稅型의 당연한 歸結로서 相續開始 당시의 被相續人의 住所에 의해 구분되며, 相續人의 住所·國籍은 그 판단에 있어서 하등의 관계가 없다. 즉 被相續人이 相續開始 당시에 國內에 住所<sup>15)</sup>를 둔 경우에는 相續財産 全部에 대하여 無制限納稅義務가 있다. 被相續人이 相續開始 당시에 國內에 住所가 없는 경우에는 國內에 있는 相續財産에 대하여만 制限納稅義務가 있다.

日本에서는 取得課稅型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財産을 取得할 당시

12) 納稅者別 公평한 稅負擔을 산출해서 부과하고 또 被相續人의 잔존가족 등의 생계에 대한 배려에서 이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13) 자세한 내용은 第IV章의 6 참조.

14) (韓國) 相續稅法 第2條 第1項.

15) 住所地란 각자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말하며, 住民登錄法의 규정에서 정하는 住民登錄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相續稅基本通則 1…1).

의 相續人의 住所에 의해 구분된다. 相續 또는 遺贈에 따른 財産을 取得할 당시에<sup>16)</sup> 相續人의 住所<sup>17)</sup>가 法施行地<sup>18)</sup> 內에 있는 경우에는<sup>19)</sup> 取得財産의 所在가 어디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 財産 全部에 대하여 納稅義務가 있다는<sup>20)</sup> 것을 無制限納稅義務라 한다. 한편 相續 또는 遺贈에 따른 財産을 取得할 당시에 相續人의 住所가 法施行地 內에 없는 경우에는 取得한 全體 財産 중 法施行地 內에 있는 財産에 대하여서만 相續稅의 納稅義務가 있는데<sup>21)</sup> 이를 制限納稅義務라 한다.

獨逸에서는 被相續人 또는 相續人이 內國人인지의 여부에 의해 구분된다. 被相續人이 死亡할 당시 또는 贈與者가 贈與를 할 당시에 內國人<sup>22)</sup>이거나, 또는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納稅義務의 成立日 당시 內國人일 경우에 無制限納稅義務가 있다<sup>23)</sup>. 被相續人이나 相續人 또는 贈與者나 受遺者 어느 쪽도 內國人이 아닌 경우에는 國內財産에 대해 이루어지는 相續·贈與에 대해서만 納稅義務가 있다<sup>24)</sup>.

우리나라와 日本에서는 相續 또는 遺贈에 따라 無制限納稅義務者가 外國所在財産(法施行地 外에 위치한 財産)을 取得하고 그 財産이 있는

16) 財産의 取得時期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相續 또는 遺贈의 경우에는 相續開始時點(사망시)으로 하고 있으며, 失蹤宣告의 경우에는 民法 第31條(失蹤宣告의 效果)에 규정하는 失蹤期間 滿了時를 사망한 것으로 본다(相續稅基本通則 1, 1의 2共-7). 우리나라에서 失蹤宣告日을 相續開始日로 보는 것과 다르다.

17) 相續稅法에는 住所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民法에서는 “各人의 生活上 本據”를 住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民法 第21條).

18) 法施行地란 相續稅法이 시행되는 지역을 말하며, 法 附則 2號 규정에 의하여 本州·北海道·四國·九州 및 附屬島嶼이며, 齒舞群島·色丹島·擇捉島는 제외된다.

19) 일시적으로 法施行地를 떠나 있는 자의 住所와 日本國民 또는 出入國管理 및 難民認定法에 의하여 永住許可를 받은 자는 法施行地를 떠나 있는 경우에도 法施行地에 住所가 있는 것으로 본다(相續稅基本通達 1.1의 共-6).

20) (日本) 相續稅法 第2條 第1項.

21) (日本) 相續稅法 第2條 第1項.

22) 居住者가 아니고 內國籍人을 뜻한다.

23) (獨逸) 相續·贈與稅法 제2조 제1항 제1호.

24) (獨逸) 相續·贈與稅法 제2조 제1항 제3호.

국가의 法令에 따라 相續稅에 해당하는 租稅를 납부한 경우에는 二重課稅를 방지하기 위하여 在外財産에 대한 稅額 控除를 인정하고 있다<sup>25)</sup>. 이것은 國際二重課稅 완화 규정에 따른 것이다.

制限納稅義務者 또는 無制限納稅義務者의 판정을 보면, 日本의 경우에는 財産을 取得한 者의 住所가 財産을 取得한 때에 法施行地 內에 있느냐의 여부가 問題가 되는 것이며 本人의 居所, 被相續人의 住所, 被相續人의 國籍 등은 관계가 없으므로, 이것이 우리나라와 日本의 다른 점이다.

小結 : 韓國과 日本은 相續人 또는 被相續人의 住所가 國內에 있느냐의 與否 또는 法施行地 內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無制限納稅義務와 制限納稅義務로 구분된다. 遺産課稅型 相續稅는 擔稅力을 被相續人(無償移轉者) 기준으로 計算함에 따라서 遺産課稅型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相續稅는 被相續人의 住所를 중심으로 無制限納稅義務와 制限納稅義務로 구분하고 있다. 取得課稅型 相續稅는 擔稅力을 相續人(無償取得者) 基準으로 計算하므로 取得課稅型을 취하고 있는 日本의 相續稅는 相續人의 住所를 중심으로 無制限納稅義務와 制限納稅義務로 구분하고 있다. 獨逸의 相續稅는 取得課稅型이나 被相續人 또는 相續人의 國籍 有無에 의해 구분하고 있다. 즉 獨逸國籍人이면 相續人이든 被相續人이든 모든 無制限納稅義務者가 된다는 점이 특이한데, 이것은 相續稅를 강화하는 의미는 있으나 取得課稅型 相續稅의 課稅方式에는 충실하지 못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相續稅를 取得課稅型으로 轉換時에는 相續稅 課稅對象 財産의 분할된 각 持分이 取得課稅型 相續稅의 課稅對象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擔稅力을 相續人(無償取得者) 기준으로

25) 韓國에서는 外國納稅額控除라고 하고, 日本에서는 外國相續控除라 한다(韓國: 相續稅法 第17條, 日本: 相續稅法 第20條).

계산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相續人의 住所를 중심으로 無制限納稅義務과 制限納稅義務을 구분해서, 住所가 國內에 있는 경우에는 相續財產의 전부에 대하여 納付義務가 있는 無制限納稅義務을 부과하고, 住所가 國內에 없는 경우에는 國內에 있는 相續財產에 대하여서만 納付義務가 있는 制限納稅義務을 부과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 다. 連帶納付義務<sup>26)</sup>

우리나라에서는 相續財產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財產을 한도로 해서 그 占有比率에 따라 連帶納付義務를 負擔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民法上 相續人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그 共同 相續財產은 共有<sup>27)</sup>로 한다고 民法에 규정되어 있고, 또 國稅基本法에서도 共有物에 속하는 財產에 관계되는 國稅 등은 그 共有者가 連帶하여 納付할 義務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sup>28)</sup>. 뿐만 아니라 民法에서는 共有物의 管理費用 기타 公租·公課 등의 義務는 持分の 比率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9)</sup>. 相續稅法에서는 相續人 또는 受遺者는 相續財產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占有比率에 따라 相續稅를 連帶하여 納付할 義務가 있으나<sup>30)</sup>, 단 相續稅의 連帶納付義務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財產을 限度로 한다<sup>31)</sup>고 규정되어 있다.

26) 崔明根은 連帶納付義務란 용어에 대해서 相續稅는 人稅에 속하기 때문에 各 相續人이 控除받는 人的控除는 다르므로 納稅義務者가 相續稅를 滯納한 경우에만 지우는 連帶納付 責任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取得課稅型 相續課稅制度 導入方案에 관한 研究』, 韓國租稅研究院, 1993. 10, p. 62).

27) 共有란 物件이 持분에 의하여 數人의 所有로 된 때를 말하며, 共有의 法律的 構成에 관하여는 하나의 所有權이 分量的으로 分割되어서 數人에게 속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多數說이다.

28) (韓國) 民法 第1006條와 國稅基本法 第25條 第1項 참조.

29) (韓國) 民法 第266條.

30) (韓國) 相續稅法 第18條 第1項.

31) (韓國) 相續稅法 第18條 第2項.

日本の 相續・贈與稅는 取得課稅型이어서 「取得者別 課稅主義」를 표망하고 있지만, 民法은 相續人이 여러 명 있는 경우(共同相續)에 相續財產은 共同相續人의 共有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sup>32)</sup> 國稅通則法은 민법의 連帶債務의 규정<sup>33)</sup>을 준용해서 國稅의 連帶納付義務을 규정하고 있다<sup>34)</sup>. 相續稅法에서는 相續人 또는 受遺者는 상호간에 取得한 財產價額을 限度로 相互連帶하여 納付할 의무가 있다<sup>35)</sup>고 규정되어 있다.

獨逸에서는 各 相續人은 각자의 相續分에 대해서만 納稅義務을 지며, 連帶納付義務에 관한 규정은 없고, 단지 納稅義務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補充的인 조치만을 취하고 있다<sup>36)</sup>.

小結：相續稅의 納稅義務을 各 個別相續人에 한하여 한정하는 것은 各 相續人 또는 受遺者 相互間에 稅負擔의 不公平이 초래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또 국가의 租稅債權의 확보를 위하여 各 相續人, 死因受贈者 및 各 受遺者 상호간에 取得한 財產價額을 限度로 相互連帶하여 納付할 義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獨逸은 連帶納付義務은 없고 補充的인 조치만 있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韓國과 日本을 분석하자.

우리나라의 民法과 國稅基本法은 民法上 相續人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그 共同 相續財產은 共有로 하며, 그 共有物에 대해서는 共有者가 相互連帶하여 납부할 義務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民法에서는 共有物의 公租·公課 등의 義務는 持分の 比率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32) (日本) 民法 第898條.

33) (日本) 民法 第432條~434條 및 民法 第437條~444條.

34) (日本) 國稅通則法 第8條.

35) (日本) 相續稅法 第34條, 民法 第911條(共同相續人間의 擔保責任)에서도 各 共同相續人은 다른 共同相續人에 대하여 賣主와 마찬가지로 그 相續分에 대응하는 擔保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6) (獨逸) 相續·贈與稅法 第20條 第3~6項에 의하면 遺產의 共同擔保 및 保險業者·財產管理人的 의무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

現行 相續稅는 遺産課稅型體系를 취하고 있지만,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財産價額의 占有比率에 따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財産의 限度內」에서 連帶納付義務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取得者別課稅主義」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遺産課稅型의 徵稅方法을 사용했다기보다는 오히려 民法과 國稅基本法의 法理를 연장해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法理와 遺産課稅型 課稅方法 사이의 괴리를 상정할 수 있다). 日本의 民法과 國稅通則法도 相續人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 相續財産은 共同相續人의 共有로 하며, 그 共有物에 대해서는 共有者가 相互連帶하여 納付할 義務를 진다(相續稅法)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連帶納付義務의 根據를 찾을 수 있으며, 또한 日本은 相續·贈與稅에 대하여 取得課稅型體系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取得者別 課稅主義」의 입장을 분명히 해서 「각자 取得한 財産價額을 限度로 相互連帶하여 納付할 義務가 있다」라고 相續稅法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相續稅法을 取得課稅型으로 轉換해서 그 徵收方法을 각자 받았거나 받을 財産價格 限度內 相互 連帶納付義務가 있다고 규정한다면(現行 制度와 內容은 同一), 이것은 곧 「取得者別 課稅主義」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며, 「取得者別 課稅主義」의 입장이므로 連帶納付義務에 대한 民法 및 國稅基本法의 法理와도 부합하게 된다.

### 3. 納稅地

대부분의 國家에서는 納稅義務者의 立場이나 稅務行政의 便宜를 고려해서 所管稅務署와 納稅地를 결정하는데, 주로 被相續人 또는 相續人의 住所地 所管 稅務署를 納稅地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보면, 相續稅의 納稅地는 相續稅所管稅務署<sup>37)</sup>이며, 相續

---

37) 相續稅所管稅務署란 法律上 有效하게 相續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의 申告를 接受하거나 相續稅에 대한 調査·決定權을 행사할 수 있는 稅務署를 말한다.

稅所管稅務署란 相續開始地를 管轄하는 稅務署이다. 相續開始地란 相續이 開始되는 場所, 즉 被相續人의 住所地이다. 따라서 被相續人의 住所지에 있는 稅務署가 所管稅務署가 되며 또한 納稅地가 된다. 이와 같이 被相續人의 住所地가 相續稅의 納稅地가 되는 것은 被相續人의 遺産 자체를 課稅對象으로 하는 遺産課稅型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住所地<sup>38)</sup>란 각자의 生活의 根據가 되는 곳을 말하며, 住民登錄法의 규정에 정하는 住民登錄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sup>39)</sup>.

日本에서는 遺産取得者들의 取得財産(分割된 遺産)을 課稅對象으로 하는 取得課稅型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相續人 또는 受遺者의 住所지를 중심으로 所管 稅務署 및 納稅地가 결정된다<sup>40)</sup>. 그러나 納稅義務者의 입장이나 稅務行政의 便宜를 고려하여 當分간은 被相續人의 사망 당시 住所가 法施行地 內에 있는 경우에는 被相續人의 사망 당시의 住所地를 所管 稅務署 및 納稅地로 하고 있다<sup>41)</sup>. 住所地<sup>42)</sup>에 대해서 相續稅法에는 규정이 없고, 民法의 규정에 의하여 “各人의 生活上 本據”를 住所로 본다<sup>43)</sup>.

獨逸에서는 所管 稅務署를 納稅地로 한다.

### 38) 특수한 경우 住所地 判定

- ① 海外居住者의 住所地: 永住를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國內에 住所를 둔 者로 보지 아니한다(通 3-1).
- ② 海外留學生 및 海外支社勤務者 등: 國內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通 3-2-1).
- ③ 內國人으로서 海外移住者: 國內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通 4-1).
- ④ 外國人: 外國人으로서 相續人과 같이 出入國管理法 第39條의 규정에 의한 外國人登錄을 하고 거주하는 者는 國內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通 5-1).

### 39) (韓國) 相續稅基本通則 1...1.

### 40) (日本) 相續稅法 第62條.

### 41) (日本) 相續稅法 附則 第3項, 國稅通則法基本通達 27-3.

42) 일시적으로 法施行地를 떠나 있는 者의 住所와 日本國民 또는 出入國管理 및 難民認定法에 의하여 永住許可를 받은 者는 法施行地를 떠나 있는 경우에도 法施行地에 住所가 있는 것으로 본다(相基通 1.1의 共-6). 또한 法人格 없는 社團이나 財團, 公益法人 등의 住所는 그 主된 營業所 또는 事務所 所在地를 住所로 본다(法 66條 第3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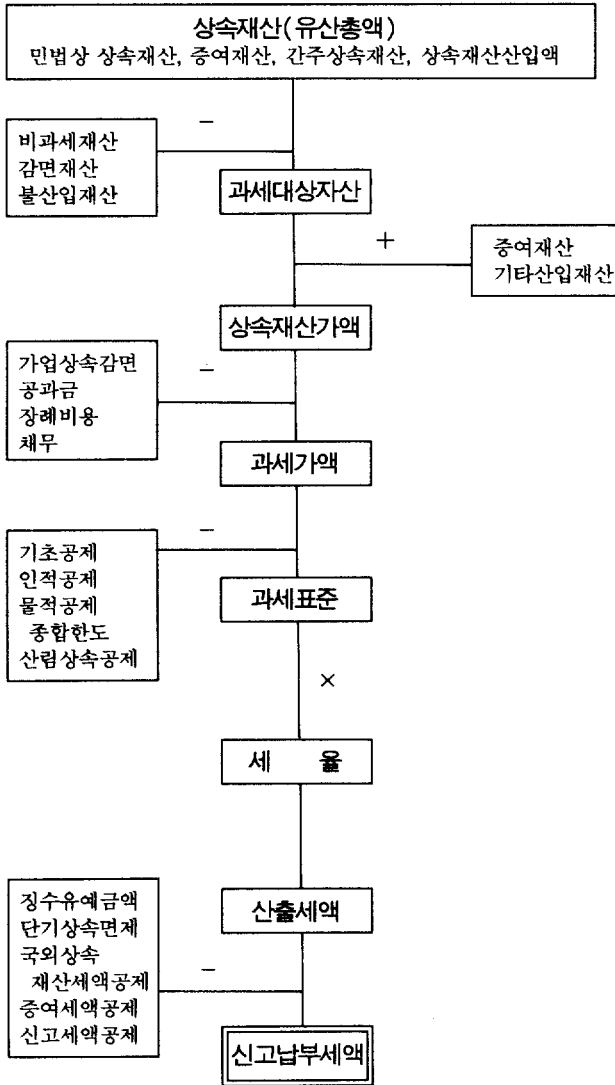
### 43) (日本) 民法 第21條.

小結 : 우리나라의 現行 相續稅法에서는 被相續人의 住所地 所管 稅務署를 納稅地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被相續人의 遺産 자체를 課稅對象으로 하는 遺産課稅型的 흐름(원리)과 부합된다. 우리의 相續稅法을 取得課稅型으로 전환하면 相續人 또는 受遺者의 住所地를 중심으로 所管 稅務署 및 納稅地를 결정하는 것이 取得課稅型的 흐름과 부합된다. 그러나 轉換 時點에서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稅務行政의 便宜를 고려해서 現行制度를 유지하는 특칙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즉 共同相續人, 死因受贈者 및 受遺者가 被相續人의 住所地 所管 稅務署에 連署하여 相續財產의 課稅價額을 共同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相續稅에 대한 調査·決定權도 被相續人의 住所地 所管 稅務署가 주관하도록 하며, 調査·決定된 내용은 각 相續人 住所地 所管 稅務署에 통보하여 각 자에게 告知하도록 한다. 단 不服請求는 稅務行政의 便宜를 위해서 相續人 住所地 所管 稅務署에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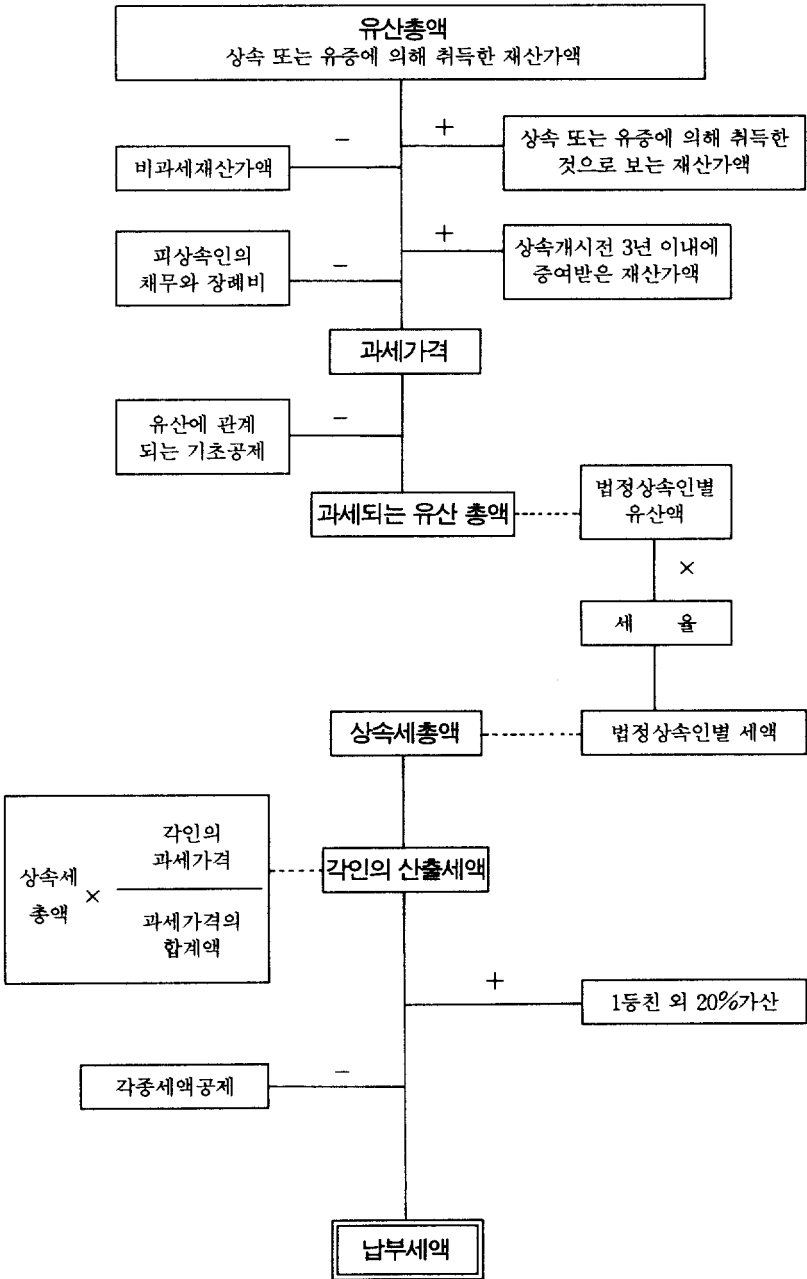
#### 4. 課稅體系 및 稅額計算方式

##### 가. 各國의 相續稅 課稅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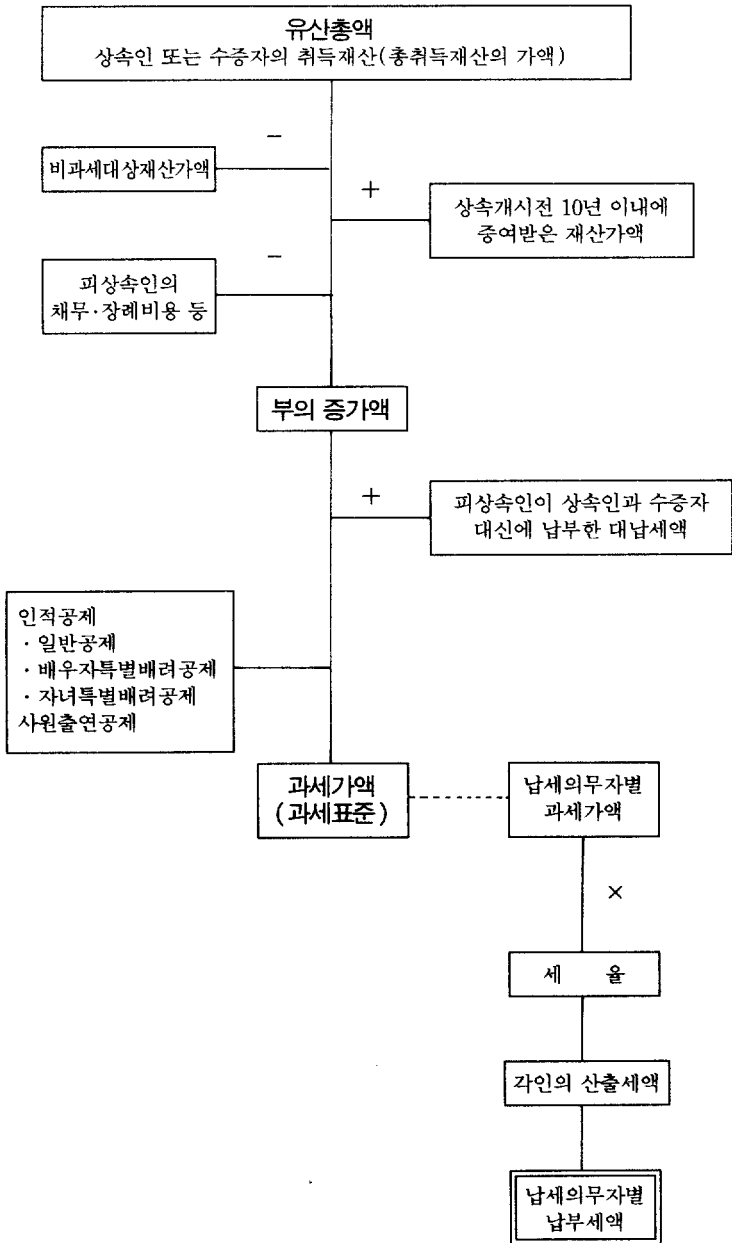
[圖 IV - 1] 우리나라 相續稅 課稅 흐름



[圖 IV-2] 日本 相續稅 課稅 흐름



[圖 IV-3] 獨逸 相續稅 課稅 흐름



## 나. 課稅體系

우리나라의 相續稅는 遺產課稅型이므로 分割되지 아니한 遺產總額을 課稅對象으로 하며, 이 遺產總額에서 非課稅財產 等과 各種 控除를 차감해서 課稅標準을 算出하고 여기에 累進構造의 稅率을 적용해서 相續稅額을 산출하는 體系로 되어 있으며, 控除惠澤은 相續人 또는 受遺者 各者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는 構造이므로 控除效果가 間接的이라고 할 수 있다([圖 IV-1] 參照). 贈與稅와의 關係를 보면, 稅負擔의 減소를 위해 生前의 贈與를 통한 방법으로 財產을 移轉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贈與稅率을 相續稅率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

日本의 相續稅는 取得課稅型이므로 分割된 各자의 몫을 課稅對象으로 하며, 基礎控除를 差減하고 여기에 分割된 各자의 몫에 따른 累進構造의 稅率을 적용해서 各人의 稅額을 算出하고 各種 控除를 차감해서 各인의 相續稅額을 산출하는 體系로 되어 있다. 控除惠澤이 相續人 또는 受遺者 各者에게 직접 돌아가서 控除效果가 直接的이라고 할 수 있다([圖 IV-2] 參照). 특히 相續財產의 偽裝分割을 방지하기 위하여 相續人들이 납부해야 할 相續稅의 總額을 課稅되는 遺產總額, 法定相續人의 數, 法定相續分이라는 객관적인 數值에 의해 결정하는 방식인 法定相續分課稅方式을 취하고 있다. 贈與稅와의 關係를 보면, 비록 贈與稅와 相續稅의 名目稅率은 같게 책정되어 있지만 贈與稅의 最高課稅階級은 相續稅의 10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累進階級은 같아서 그 累進度을 높여 稅負擔의 減소를 위해 生前에 贈與하는 방법으로 財產을 移轉시키는 행위를 억제하고 있다.

獨逸의 相續稅도 取得課稅型이어서 分割된 各자의 몫(富의 增加額)을 課稅對象으로 하고 여기에 各種 控除를 차감한 후 分割된 各자의 몫에 따른 累進構造의 稅率을 적용해서 各人의 稅額을 算出하는 體系로 되어 있다. 따라서 控除惠澤이 相續人 또는 受遺者 各자에게 직접 돌아가서 控除效果가 直接的이라고 할 수 있다([圖 IV-3] 參照). 그러나 분

劃된 각자의 몫에 累進稅率을 적용함에 따라서 僞裝分割問題가 대두될 수 있으나 相續人을 被相續人 또는 贈與者와의 身分上의 관계에 따라 분류해서 各 分類別로 적용되는 一般控除額과 稅率에 차이를 두는 方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制度 自體가 복잡해짐을 피할 수는 없다. 相續稅와 贈與稅의 관계를 보면, 相續稅와 贈與稅를 동일하게 취급해서 동일한 稅率構造를 적용함으로써 生前移轉과 相續에 의한 移轉方法 사이에 稅負擔의 中立的인 效果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小結 : 現行 相續稅制를 향후 取得課稅型으로 전환시킬 때에는 먼저 課稅目的(또는 基本趣旨)을 명확히 한 후에 課稅體系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sup>44)</sup>. 즉 富의 集中抑制에 비중을 둘지, 家族共同體의 物的基礎 保護에 비중을 둘지 아니면 稅負擔의 衡平性 提高에 비중을 둘지를 먼저 決定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分割된 각자의 몫을 課稅對象으로 하고, 여기에 累進構造의 稅率을 적용해서 各人의 納付稅額을 算出하는 構造로 되어야 하며, 특히 遺産의 僞裝分割問題를 해결해야 한다. 이 問題를 해결하기에 獨逸式의 課稅體系(相續人을 4종류로 분류해서 各 分類別 적용되는 一般控除額과 稅率에 차이를 두고 있음)는 너무 복잡하고, 「純粹 取得課稅型」으로 전환하기에는 현재의 相續慣行·相續登記制度 및 稅務行政의 뒷받침 문제 등을 고려하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遺産課稅型과 取得課稅型의 折衷型인 法定相續分課稅方式의 도입이 바람직하며, 또한 相續으로 취득하는 財産의 納稅能力과 贈與에 의해 無償으로 취득하는 財産의 納稅能力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相續稅와 贈與稅를 동일하게 취급해서 동일한 稅率體系(統合稅率體系일 수도

44) 日本 相續稅制의 기본취지는 富의 集中抑制에 비중을 두고 있어서 높은 累進稅率과 贈與抑制的인 稅率構造를 가지고 있다. 獨逸 相續稅制의 기본취지는 殘存家族의 生計保護에 비중을 두고 있어서 被相續人 또는 贈與者와의 親族關係의 遠近에 따라 一般控除額과 稅率에 차이를 두고 있다.

있고 分離稅率體系일 수도 있다)를 적용함으로써 生前移轉과 相續에 의한 移轉方法 사이에 稅負擔의 中立的인 效果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控除時에 있어서는 稅額控除方法을 채택하든 課稅價額控除方法을 채택하든 控除의 惠澤이 각자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즉 取得課稅型 相續稅에서는 分割된 各 相續人의 몫을 課稅對象으로 하기 때문에 控除惠澤도 相續人 또는 受遺者 각자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超過累進稅率構造下에서는 課稅價額控除方式은 相續總額이 많은 高額相續階層에 유리하며, 稅額控除方式은 相續總額이 적은 中下位相續階層에 유리하다. 따라서 富의 分散을 도모하는 取得課稅型으로 전환시에는 稅額控除方式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 다. 稅額計算方式

우리나라의 相續稅는 分割되지 아니한 遺産總額을 課稅對象으로 하며, 이 遺産總額에서 각종 控除額을 일괄공제해서 課稅標準을 산출한 후에 累進構造의 稅率을 적용해서 相續稅額을 산출하고, 다시 免除 또는 控除稅額을 차감하는 遺産課稅方式이다. 이러한 방식은 富가 1인에게 相續되든 여러 사람에게 相續되든 稅負擔의 總額이 동일하고, 또 동일한 수준의 稅率에서는 相續稅收가 取得課稅型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는 특징과 各 相續人이 無償으로 취득하는 富의 多寡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준의 限界稅率이 적용된다는 모순이 있다.

日本과 獨逸의 相續稅는 分割된 各자의 몫을 課稅對象으로 해서, 여기에 累進構造의 稅率을 적용해서 各인의 稅額을 算出하고 各種 稅額을 控除하여 各인의 相續稅額을 산출하는 取得課稅方式이다. 이러한 방식은 富가 여러 사람에게 分散移轉되면 될수록 相續稅 總負擔額이 감소된다고 하는 富의 分散誘引機能이 있다는 점과 동일한 수준의 稅率에서는 稅收가 감소하지만 개인인 擔稅力을 측정하여 합리적인 課稅를 할 수 있다

는 특징이 있다. 특히 現行 日本의 相續稅制는 遺産分割의 상황에 따라 稅負擔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sup>45)</sup> 課稅價額에서 基礎控除 後에 法定相續人이 각각의 法定相續分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假定하여 算出한 稅額을 各 法定相續人이 실제 취득한 財産의 價額에 對應하도록 按分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遺産課稅型과 取得課稅型의 折衷型이라고 할 수 있다.

小結：현행 相續稅制가 取得課稅型으로 전환해서 分割된 각각의 몫을 課稅對象으로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 遺産總額을 각각의 몫으로 分割한 價額(각자 取得한 財産價額)에 相續人 등 각자에게 해당되는 각종 控除를 한 다음 超過累進稅率을 적용해서 각각의 稅額을 산출하며, 또한 각종 控除惠澤이 각자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각각의 課稅價額 또는 算出稅額에서 차감하는 「純粹取得課稅型」이다<sup>46)</sup>. 이 방법은 取得課稅型의 원리에 충실한 면은 있으나, 遺産分割

45) 다른 말로 표현하면, 相續財産의 僞裝分割에 의한 相續稅의 回避行爲를 防止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46) 「純粹取得課稅型」을 좀더 구체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 ① 個人的 擔稅力을 정확히 측정해서 그에 相應하는 稅負擔을 지우고 控除效果도 직접적이 되도록 하는 형태이다.
- ② 基礎控除의 縮小 내지는 廢止가 全제되므로 家族共同體의 物的基礎保護에는 미흡한 면이 예견되지만, 富의 分散 및 稅負擔의 衡平性 提高에는 적합하다.
- ③ 入養 또는 遺贈 혹은 死因贈與 등을 통한 僞裝分割에 대한 대비책의 수립이 이 制度 運營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 ㉠ 養子結緣이란 當事者間의 意思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므로, 여러 명의 養子를 두는 방법에 의해서 相續財産의 僞裝分割이 가능하다. 따라서 相續財産의 僞裝分割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相續人의 範疇에 속하는 養子의 數를 制限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現行 日本의 相續稅法에서는 實子が 있는 경우에는 1名, 實子が 없는 경우에는 2名까지 養子를 인정하고 있음).
  - ㉡ 遺贈과 死因贈與(死因贈與는 遺贈의 규정을 準用하고 있으므로 遺贈에 포함시킴)에 의한 遺産의 僞裝分割의 가능성은 적지만 그 防止策은 수립해야 할 것이다. 遺贈은 (共同)相續人에 대한 遺贈과 第3者에 대한 遺贈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비록 遺留分制度가 있지만 共同相續人의 保護次元에서 受贈分(특히 第3

의 상황에 따라서 稅負擔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遺產의 僞裝分割相續이 가속화될 우려가 많다<sup>47)</sup>. 따라서 日本의 現行 相續稅制를 원용하면 이와 같은 問題點을 어느 정도 해결 수 있다.

둘째, 日本의 現行 相續稅制는 遺產總額에서 課稅價格을 산출하고 다시 基礎控除額을 차감한 後에 法定相續分을 기초로 各 相續人의 稅額을 계산하고, 算定된 稅額의 合計額을 各 法定相續人이 실제 取得한 財產의 價額에 對應하도록 按分해서 各인의 稅額을 산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sup>48)</sup>, 이러한 方法의 채택문제는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 라. 相續開始 前 5(3)年 以內에 贈與받은 財產의 期間問題

우리나라의 現行 制度에 의하면 被相續人이 相續人에게 相續開始 前 5年 以內에 贈與한 財產價額이나 相續開始 前 3年 以內에 相續人 이외의 자에게 贈與한 財產은 相續稅 課稅價額에 加算하도록 되어 있다.

者에 대한 遺贈)은 制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즉, 受贈分이 共同相續人의 遺留分 合計보다는 적게 되도록 설정해야만 僞裝分割을 防止할 수 있을 것이다(民法과 相續稅法의 相衡問題).

- ④ 純粹한 取得課稅型 相續稅制의 흐름에 부합하는 配偶者控除, 未成年者控除, 障礙者控除, 贈與稅額控除 및 國外相續財產免除만 존속시키고 나머지 控除는 廢止해야 한다.
  - ⑤ 현재의 相續價行, 相續登記制度, 名義信託制度 및 稅務行政力 未備 등의 문제로 인해서 施行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 ⑥ 「純粹取得課稅型」의 課稅體系의 흐름은 相續財產에서 相續人別 課稅價格(課稅標準)의 算出→(各 相續人別로 各種控除 차감)→各 相續人別로 多段階의 超過累進稅率 적용→相續人別 稅額 算出→(各 相續人別로 各種控除 차감)→納付稅額의 算出로 정리된다.
- 47) 相續人 등의 수가 많아서 相續分이 작아질수록 總租稅負擔額이 작아지는데, 日本에서는 入養이라는 僞裝分割方法을 이용해서 相續稅를 回避했던 사례가 있었으며, 日本政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8년의 相續稅法 改正에서 現행의 法定相續分 課稅方式를 채택했다.
- 48) 이러한 相續稅 課稅方法은 '法定相續分 課稅方式'이라고 할 수 있다.

日本の 相續稅法은 相續開始 前 3年 이내에 贈與받은 財産價額은 相續稅 課稅價格에 加算해서 相續稅를 계산하고 이미 贈與 당시에 課稅된 贈與稅는 控除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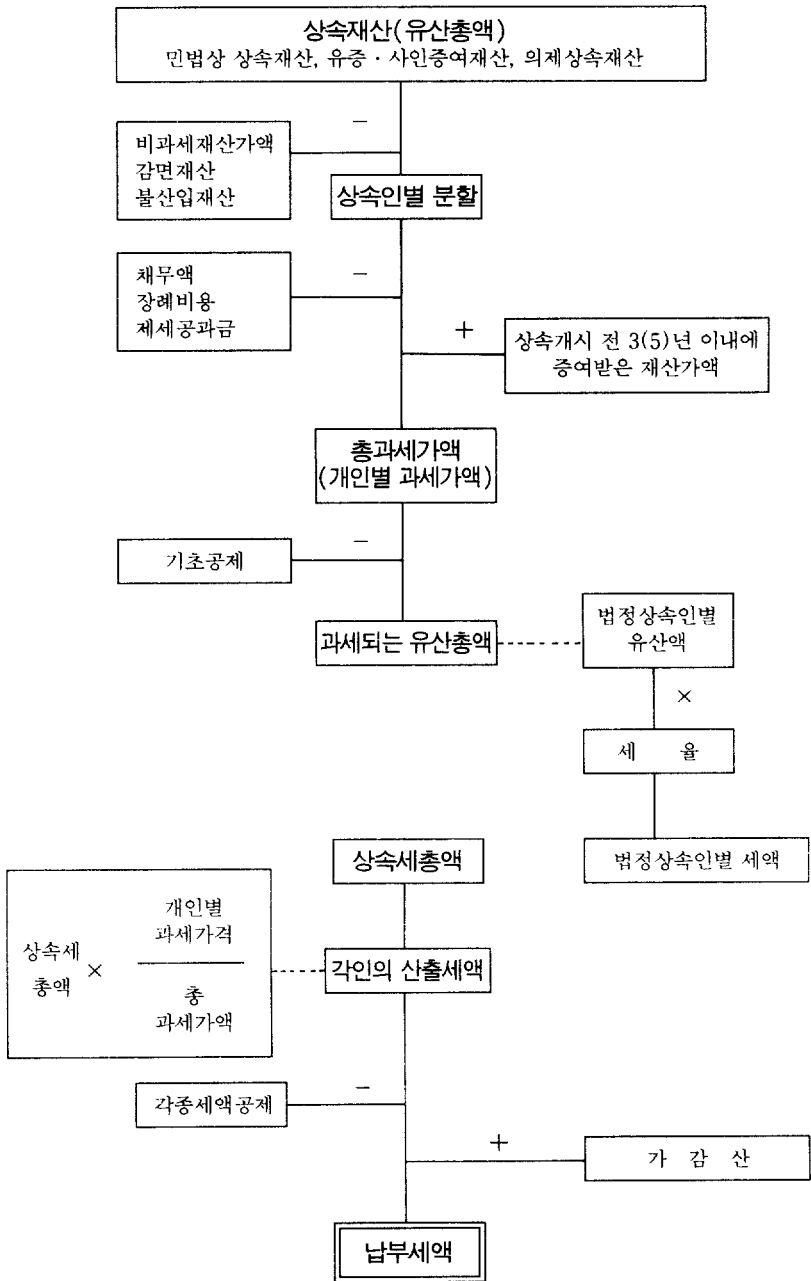
獨逸의 相續稅法은 동일한 贈與者가 동일한 受贈者에게 10年 이내에 수회에 걸쳐 財産을 贈與하는 경우에는 각 取得 당시의 價額을 계산해서 이를 合算하고, 이 合算額에 대해 현재의 稅率로 稅額을 계산한 후, 그 總稅額으로부터 이전의 取得財産에 대해 배부되는 현재 稅額을 控除하도록 하고 있다.

小結 : 각국은 贈與者가 贈與財産을 상당기간에 걸쳐서 少額으로 分散 贈與하는 방법에 의하여 相續稅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贈與財産의 累積合算 課稅期間을 두고 있다. 現 段階에서 우리나라는 租稅行政水準이 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었고 또 除斥期間이 10年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租稅回避 試圖을 저지하기 위하여 累積合算 課稅期間을 10年으로 설정하는 方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나, 당분간은 電算網이 완비되지 못해서 行政的인 지원과 事後管理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方案의 실시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取得課稅型으로 轉換하더라도 당분간은 現行制度를 유지하다가 電算網이 완비되고 상당한 노후가 축적된 후에 累積合算 課稅期間을 10年으로 연장해야 할 것이며, 또한 各種 控除額도 10年 累積合算期間에 대응하는 수준의 金額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小結綜合 : 위의 내용을 綜合해서 새로운 相續課稅體系인 「法定相續分 課稅方式에 의한 取得課稅型」의 대략적인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遺産總額에서 分割된 각자의 몫을 課稅對象으로 하며 둘째, 여기에 超過累進稅率을 적용하며 셋째, 遺産의 偽裝分割相續을 방지하기 위해서 法定相續分 課稅方式을 도입하는 것이다. 좀더 구체화시키면 [圖 IV-4]와 같은데, 새로운 相續稅體系를 總課稅價額의 算出, 課稅되

[圖 IV-4] 새로운 相續課稅體系의 흐름



는 遺産總額의 算出, 相續稅總額의 算出, 各人의 相續稅額(算出稅額)의 算出, 各人의 納付稅額의 算出의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자.

總課稅價額의 算出 : 相續, 遺贈, 死因贈與 및 擬制相續에 의해 취득한 財產價額에서 非課稅財產價額 · 減免財產價額 및 不算入財產價額을 차감해서 相續人別로 분할하고, 다시 被相續人의 債務 중 승계한 債務額 · 葬禮費用 및 諸稅公課金を 해당 相續人別로 차감하고<sup>49)</sup>, 被相續人으로부터 相續開始 前 3(5)年 이내에 증여받은 贈與財產價額<sup>50)</sup>을 해당 相續人別로 累積合算하면 遺産分割에 의하여 實際로 취득한 個人別 課稅價額이 된다. 이 個人別 課稅價額을 합한 것이 總課稅價額이다.

課稅되는 遺産總額의 算出 : 현행 基礎控除制度를 계속 유지한다면 總課稅價額에서 基礎控除를 차감하면 課稅되는 遺産總額이 된다.

相續稅總額의 計算 : 課稅되는 遺産總額을 각 法定相續人이 각각의 法定相續分에 따라 取得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의 法定相續人別 遺産額에 그에 상응하는 稅率을 적용하여 法定相續人別 稅額(臨時稅額임)을 산출하고 이것을 合計하여 相續稅總額을 구한다. 한편 「法定相續分 課稅方式」에서는 法定相續人 數의 多寡에 따라서 稅負擔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法定相續人의 數가 중요한데, 日本의 「法定相續分 課稅方式」에서는 法定相續人에 속하는 養子의 數를 제한해서 僞裝入養에 의한 相續財產의 僞裝分割을 방지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稅負擔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血緣關係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入養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

49) 生前의 分割贈與에 의하여 재산을 동일인에게 여러 번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相續稅의 높은 限界稅率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相續財產에 相續開始 前 10年 이내에 贈與받은 財產價額을 累積合算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債務額, 葬禮費用 및 諸稅公課金도 實際 取得한 相續財產價額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相續開始 前 10年 이내에 贈與받은 財產價額에서는 공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50) 이 財產價額은 과세행정의 간편성과 재산의 재평가에 내재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한다면 贈與 당시의 價額에 의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日本과 美國도 증여 당시의 價額에 의하고 있다.

아서, 入養에 의한 相續財産의 僞裝分割의 가능성은 적다고 하겠다.

各人の 算出稅額의 計算 : 相續稅總額을 總課稅價額에서 차지하는 個人別 課稅價額의 비율로서 按分하여 各인의 相續稅額을 구한다.

$$\text{相續稅總額} \times \frac{\text{個人別 課稅價額}}{\text{總課稅價額}}$$

各人の 納付稅額의 算出 : 各인의 納稅稅額은 稅額控除方法을 채택했으므로 이 단계에서 各人の 相續稅額(算出稅額)에서 해당되는 各種 控除額을 차감하며, 加減算制度를 도입시에는 이 단계에서 일정액을 加減算하면 된다.

## 5. 控除制度

### 가. 控除의 種類 및 方法

相續稅란 일정 규모 이상의 財産所有者가 課稅對象이 되며, 課稅의 水位는 통상적으로 控除制度를 통해서 調整되고 있다는 점에서 控除制度의 的의를 찾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日本 및 獨逸의 控除制度는 상이한 構造를 가지고 있고, 種類도 서로 다르다.

우리나라는 控除의 종류가 다양하고, 課稅價額控除方法(基礎控除, 人的控除, 物的控除 및 山林相續控除)과 稅額控除方法(短期相續免除, 國外相續免除, 贈與稅額控除 등)을 모두 채용하고 있다(控除額의 변천은 <附表 4> 參照).

日本은 控除의 종류가 비교적 간단하며, 遺産에 관계되는 基礎控除만 課稅價額控除方法으로 運營되고 나머지는 稅額控除方法으로 運營되고 있다(控除額의 변천은 <附表 10> 參照).

獨逸도 控除의 종류가 간단하며, 課稅價額控除方法으로만 運營되고

있어서 運營이 비교적 간단하다. 특히 一般控除에서는 身分關係에 따라 差等を 두고 있고, 子女特別配慮控除에서는 연령에 따른 差等を 두고 있는데, 이것은 控除制度를 相續人의 특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控除方法을 보면, 超過累進稅率構造下에서 課稅價額控除方式은 相續總額이 많은 高額相續階層에 유리하며, 稅額控除方式은 相續總額이 적은 中下位相續階層에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富의 分散을 도모하는 取得課稅型으로 전환시에는 稅額控除方式이 적합할 것이다.

분석의 편의상 基礎控除 · 人的控除 및 其他控除로 나눈다.

#### 나. 基礎控除

中產階層과 그 以下階層의 物的 生活基礎를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制度이며, 우리나라에서는 課稅價額에서 1億원을 控除한다(制限 · 無制限納稅義務者 모두 공제).

日本에서는 相續稅의 課稅最低限度 또는 非課稅限度額을 의미하며, 다음의 合計額이며 獨逸에는 基礎控除制度가 없다.

- ① 4,800萬円
- ② 950萬円×法定相續人數

우리나라의 1992年の 相續稅 賦課 實績 統計에서 基礎控除額은 665억 2천만원이며, 課稅價額(1조 3,160억원)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을 <表 IV-1>에서 계산하면 5.05%이고<sup>51)</sup>, 總控除額(4,771억원; 人的 · 物的 ·

51) 算出稅額을 기준으로 韓 · 日 兩國을 비교하는 것은 兩國의 控除 種類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比較가 곤란하다. 따라서 相續財產(遺產總額)에서 公課金 · 被相續人의 債務 및 葬禮費 등을 차감했으나 各種 控除額을 차감하기 前의 課稅價額(課稅價格: [圖 IV-1]과 [圖 IV-2] 參照)이 相續되는 財產 價値를 비교적으로 잘 반영할 것으로 看做했기 때문에 이것을 比較의 基準으로 삼았다.

〈表 IV - 1〉 우리나라의 相續稅 賦課現況(1992)

(單位: 百萬元, 名)

	被 相 續 人 數	金 額
課 稅 價 額	3,438	1,316,017
算 出 稅 額	—	334,185
人的·物的·山林相續控除額	—	410,541
基 礎 控 除 額	—	66,520

註: 1. 人的·物的·山林相續控除額에는 基礎控除額 및 算出稅額에서 차감되는 各種 控除額(國外相續財產免除, 贈與稅額控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자세한 내용은 〈附表 4〉 參照.

資料: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1993.10.  
韓國租稅研究院.

山林相續控除額+基礎控除額)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9%이다.

〈附表 4〉에서 보면 1989년 1천만원이던 基礎控除가 1991년에는 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됨(1990년의 稅法改正으로 控除額이 전반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基礎控除額이 課稅價額 및 總控除額에서 점하는 비율도 높아져야 했지만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sup>52)</sup>, 이것은 相續財產에서 不動產이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不動產에 대한 課稅評價額의 변동과 相關關係가 높다. 즉 이 기간 동안 不動產價格이 급상승함은 물론, 個別公示地價를 相續課稅價額 評價에 적용함에<sup>53)</sup> 따라 相續財產價額이 급증했기 때문에 그 比率은 감소했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相續財產에서 不動產이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控除額을 조정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에는 不動產價格의 變動을 고려해야 한다.

52) 참고로 보면 基礎控除額이 課稅價額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10%(1989년)→3.31%(1991년)→5.05%(1992년)로 낮아졌고, 基礎控除額이 總控除額에서 점하는 비율 18.69%(1989년)→12.98%(1991년)→13.94%로 낮아졌다(資料: 韓國租稅研究院).

53) 1991年 1月 1日 이후에 相續(贈與는 1990年 5月 1日 이후)이 開始되는 것부터 個別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課稅됨.

日本の 1991년도 遺産에 관한 基礎控除額이 課稅價格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表 IV-2>에서 계산하면 22.34%이고, 總控除額(基礎控除額+稅額控除)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70.05%로서 그 比率이 높다고 할 수 있다(전체적인 현황은 <附表 7> 參照).

<表 IV-2> 日本의 相續稅 課稅現況(1991)

(單位: 億圓, 名)

	相 續 人 數	金 額
課 稅 價 格	183,567	178,417
相 續 稅 額	179,555	61,560
稅 額 控 除	51,846	17,040
遺産에 관한 基礎控除額	56,554	39,862

註: 1. 課稅價格, 相續稅額과 稅額控除欄의 相續人數는 實際人員을 표시한다.  
 2. 遺産關係 基礎控除額欄의 人員은 被相續人의 數이다.  
 3. 1991년중에 相續·遺贈에 의한 財産取得者를 대상으로 1992年 6月 30日까지 申告 및 處理(更正, 決定)된 課稅事實을 『申告書, 決意書』를 基礎로 작성했다.  
 資料: 日本 國稅廳(編), 『平成3年度版 國稅廳統計年報書』, 1993. 5.

小結: 中產階層과 그 以下階層의 物的 生活基礎를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制度인 基礎控除制度는 비록 取得課稅型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이지만 轉換時에는 配偶者가 없는 경우에 대한 배려로 계속 존속시켜야 할 것이다. 그 控除方法에는 첫째, 定額控除方法 둘째, 法定相續人數에 따른 比例控除方法 셋째, 兩者를 혼합한 方法을 상정할 수 있는데 定額控除方法이 租稅行政上 간편하다. 基礎控除額은 1인당 課稅價格 및 相續稅收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서 그 水準을 설정해야 하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課稅價額(課稅價格)이나 總控除額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日本에 비해 낮아서<sup>54)</sup> 中產階層과 그 以下階層의 物的 生活基礎의

54) 韓·日 兩國의 1人當 基礎控除額의 比較가 가능하다면 基礎控除額의 調整에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되나, 兩國의 課稅方式이 日本은 相續人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被相

보호라는 政策的인 배려 측면에서는 日本에 비해서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金融實名制가 이미 실시되어서 假名 및 借名에 의한 金融資產의 相續·贈與가 사실상 어려워졌고, 또 각종 物的控除의 축소가 예상되므로 基礎控除의 水準을 조정해야 하는데<sup>55)</sup> 첫째, 物的控除를 廢止하고 그 價額만큼 現行 基礎控除額을 증가시킨다면 1992年의 相續稅 부과 現行 기준으로 2.5배 내외까지의 上向調整이 가능하다는 案<sup>56)</sup>을 상정할 수 있고 둘째, 有住宅者와 無住宅者 사이의 水平的 衡平性 提高를 위해서 住宅控除를 폐지하고 이 價額을 基礎控除에 포함시킬 때에는 2배까지 上向調整하는 案(이 때에 農地·草地 및 山林地 控除는 UR 타결 이후에 廢止가 곤란하므로 相續人別로 稅額控除하도록 전환한다)을 상정할 수 있다.

#### 다. 人的控除

人的控除는 被相續人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여 生存者의 生活安定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無制限納稅義務者에게만 적용되고,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申告 또는 申請이 없어도 당연히 적용되며, 또한 遺産總額을 課稅對象으로 하는 遺産課稅型方式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人的控除의 對象者가 相續의 포기 등으로 相續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人的控除가

續人을 기준으로 統計作業이 상이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1人當 基礎控除額의 비교가 불가능함이 아쉽다.

55) 崔明根은 相續稅의 課稅強化가 中產層 家族共同體의 物的基礎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現行 相續稅法이 인정하고 있는 각종 物的控除를 없애는 방안을 摸索한다면 또 金融實名制의 실시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基礎控除額으로써 法定相續人 1人當 약 2 億원 정도로 예시하고 있다(崔明根, 前掲書, p. 67).

56) 1992年度 物的控除額의 合計는 993億원이고 基礎控除額은 665億원이므로, 物的控除의 폐지시에는 이 額數만큼 基礎控除額을 上向調整할 수 있을 것이나, 이 調整의 폭은 改正 당시의 物的控除의 合計를 참조해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적용된다<sup>57)</sup>. 日本에서도 相續人 중에 相續拋棄를 한 者가 있을 경우에는 相續拋棄를 아니한 것으로 보아 人的控除가 적용된다.

人的控除의 種類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配偶者控除, 子女控除, 未成年者控除, 年老者控除 및 障礙者控除가 있으며, 人的控除의 限度는 다음과 같다.

$$\text{人的控除合計額} \leq \text{相續稅課稅價額} - (\text{遺贈} + \text{일정기간 內的 贈與價額})$$

日本에는 配偶者稅額 輕減, 未成年者控除 및 障礙者控除가 있다.

獨逸<sup>58)</sup>에는 一般控除(身分關係에 따라 差等), 配偶者特別配慮控除 및 子女特別配慮控除(年齡에 따라 差等)가 있다.

〈表 IV-3〉에서 우리나라의 主要 控除額의 控除總額 對比 比率를 보면, 配偶者控除가 38.80~43.05%를 점하여 增加趨勢에 있고, 未成年者控除는 4.69~1.05%를 점하여 減少趨勢에 있으며, 障礙者控除는 0.26~0.51%를, 其他控除는 53.61~58.09%를 점하고 있어서 配偶者控除와 其他控除(특히 物的控除)가 상당한 비중을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IV-4〉에서 우리나라의 主要關聯指標 대비 各種 控除 比率를 보면, 控除總額이 (相續稅) 課稅價額에서 점하는 比率에는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그 比率는 22~31%선이며, 配偶者控除額이 課稅價額에서 점하는 比率는 10~14%선이고, 未成年者控除額 課稅價額에서 점하는 比率

57) (韓國) 相續稅基本通則 62~11.

58) 獨逸에서는 相續稅와 贈與稅가 통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兩 稅制를 差別하지 않고 그 控除額을 共通的으로 적용하며, 또한 被相續人 또는 贈與者와의 신분상의 관계에 따른 控除額의 差等 및 子女의 生計維持能力에 따른 子女特別配慮控除額의 差等 등에서 보듯이 차별적인 控除限度額을 설정함으로써 控除制度를 보다 相續人의 特性에 맞게 활용하고 있어 生存家族의 生計配慮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은 0.06~0.16%선이며, 障礙者控除가 課稅價額에서 점하는 比率은 0.2~1.15%선으로서 配偶者控除가 상당히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表 IV - 3〉 우리나라 相續稅의 各種 控除額

(單位: 百萬元)

	控除總額	主 要 控 除 額			
		配偶者控除	未成年者控除	障礙者控除	其他控除
1988	46,034(100)	17,860(38.80)	2,158(4.69)	176(0.38)	25,840(56.13)
1989	83,688(100)	32,755(39.14)	2,104(2.51)	216(0.26)	48,613(58.09)
1990	139,778(100)	57,600(41.21)	4,620(3.31)	438(0.31)	77,120(55.17)
1991	162,401(100)	69,306(42.68)	1,704(1.05)	445(0.27)	90,946(56.00)
1992	410,541(100)	180,419(43.05)	7,929(1.93)	2,092(0.51)	220,101(53.61)

註: 1. 控除總額이란 相續稅法 第11條 및 第11條의 4의 控除(配偶者·子女·未成年者·年老者·障礙者·農地 등 相續·山林 및 其他控除)의 合計액을 말한다.

2. 其他控除란 相續稅法 第11條 및 第11條의 4의 控除에서 配偶者·未成年者 및 障礙者控除를 제외한 나머지 공제를 말한다.

3. ( )안은 控除總額 대비 비율이다.

資料: 韓國租稅研究院.

〈表 IV - 4〉 우리나라의 主要關聯指標 對比 各種 控除比率

(單位: %)

	控 除 總 額			主 要 控 除								
				配偶者稅額控除			未成年者控除			障礙者控除		
	對 GNP	對 國稅	對相續稅	對 GNP	對 國稅	對相續稅	對 GNP	對 國稅	對相續稅	對 GNP	對 國稅	對相續稅
1988	0.04	0.24	24.53	0.01	0.09	9.52	-	-	0.09	-	0.01	1.15
1989	0.06	0.39	26.53	0.02	0.15	10.38	-	-	0.07	-	0.01	0.67
1990	0.08	0.52	28.45	0.03	0.21	11.72	-	-	0.09	-	0.02	0.94
1991	0.08	0.54	22.15	0.03	0.23	9.45	-	-	0.06	-	0.01	0.23
1992	0.18	1.17	31.20	0.08	0.51	13.71	-	-	0.16	-	0.02	0.60

註: 對相續稅란 相續稅 課稅價額 對比 比率을 말한다.

資料: 韓國租稅研究院.

〈表 IV-5〉에서 日本의 主要 控除額의 控除總額 대비 比率을 보면, 配偶者稅額輕減이 控除總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96.50~97.45%이며, 未成年者控除가 차지하는 比率은 0.15~0.33%이며, 障礙者控除가 점하는 比率은 0.19~0.26%로서 配偶者稅額輕減이 차지하는 比率이 대부분 임을 알 수 있다<sup>59)</sup>.

〈表 IV-5〉 日本 相續稅의 各種 控除額

(單位: 億圓)

	控除總額	主要控除額		
		配偶者稅額輕減	未成年者控除	障礙者控除
1987	6,963(100)	6,753(96.98)	23(0.33)	18(0.26)
1988	9,594(100)	9,349(97.45)	26(0.27)	18(0.19)
1989	10,732(100)	10,398(96.80)	16(0.15)	24(0.22)
1990	12,144(100)	11,738(96.66)	21(0.17)	27(0.22)
1991	17,040(100)	16,443(96.50)	37(0.22)	33(0.19)

註: 1. 控除總額이란 配偶者輕減, 未成年者控除, 障礙者控除, 短期相續控除 및 贈與稅額控除 등의 合計額을 말한다.

2. ( )안은 控除總額 대비 比率이다.

資料: 日本 國稅廳(編), 『平成3年度版 國稅廳統計年報書』, 1993. 5.

財務部 稅制室, 『日本の 稅制概要』, 1993. 5.

〈表 IV-6〉에서 日本의 主要關聯指標 對比 各種 控除比率을 보면, 控除總額이 (相續稅) 課稅價格에서 점하는 비율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으나 8~10%선에 있으며, 配偶者稅額輕減이 相續稅 課稅價格에서 차지하는 比率도 8~10%선이고, 未成年者控除와 障礙者控除가 相續稅 課稅價格에서 점하는 비율은 0.01~0.03%로서 미미하며, 配偶者稅額輕減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59) 日本의 配偶者稅額輕減·未成年者控除 및 障礙者控除는 우리나라와 달리 稅額控除이므로 이를 課稅價額 내지는 GNP 등에 대비시키는 경우, 우리나라의 그比重과는 比較가 不可能하므로 全體的인 흐름을 파악하는 側面에서만 活用이 가능할 것이다.

〈表 IV-6〉 日本의 主要關聯指標 對比 各種 控除比率

(單位: %)

	控 除 總 額			主 要 控 除								
				配偶者稅額輕減			未成年者控除			障 碍 者 控 除		
	對 GNP	對 國稅	對相續稅	對 GNP	對 國稅	對相續稅	對 GNP	對 國稅	對相續稅	對 GNP	對 國稅	對相續稅
1987	0.25	1.46	8.44	0.24	1.41	8.18	-	-	0.03	-	-	0.02
1988	0.32	1.84	9.95	0.31	1.79	9.70	-	-	0.03	-	-	0.02
1989	0.34	1.88	9.12	0.32	1.82	8.84	-	-	0.01	-	-	0.02
1990	0.35	1.93	8.61	0.34	1.87	8.32	-	-	0.01	-	-	0.02
1991	0.47	2.70	9.55	0.46	2.60	9.22	-	-	0.02	-	-	0.02

註: 對相續稅란 相續稅 課稅價額 對比 比率를 말한다.

小結: 人的控除制度는 被相續人의 生存家族들의 生計에 대한 배려, 특히 相續人의 特性에 맞는 控除制度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生存家族의 生活安定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韓·日 兩國의 各種 控除를 비교해보면 控除總額에 대한 主要 控除額의 構成比率에 是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日本에서는 配偶者稅額輕減이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고 未成年者控除와 障 碍 者 控 除는 미미한 위치에 불과한데, 우리나라에서는 主要 控除額의 構成比率이 分散되어 있어서 政策意志 내지는 政策에 대한 告知效果(announcement effect)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種類가 다양한 우리나라의 人的 控除를 축소하고 최근에 와서 중시되고 있는 配偶者控除額을 조정해서 政策意志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사료된다<sup>60)</sup>.

60) 참고로 相續稅法 第11條 第4項에 나열된 各種 控除(各種 控除의 합을 控除總額이라고 하자)가 控除總額에서 점하는 비율을 1992年을 기준으로 보면, 配偶者控除가 43.95%, 子女控除가 14.33%, 未成年者控除가 1.03%, 年老者控除가 1.48%, 障 碍 者 控 除가 0.71%, 住宅相續控除가 18.58%, 農地 등 相續控除가 6.85%, 山林相續控除가

取得課稅型으로 전환시 配偶者控除制度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方案들을 상정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控除方法이 課稅價額控除方式에서 稅額控除方式으로 전환되므로 控除額도 이에 상응하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現行 配偶者控除制度는 定額控除方法과 結婚年數에 따른 比例控除方法을 혼합한 方法으로서, 婚姻生活期間을 반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功績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단 配偶者가 遺産形成에 기여한 功勞<sup>61)</sup>와 配偶者의 老後 生活保障 등을 위해서 또 가까운 연도 내에 相續開始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核家族化의 進展<sup>62)</sup> 등을 고려해서 現行 配偶者控除額을 上向 調整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制度로의 이행이 순조롭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配偶者控除制度를 多段階化하는 방안이다<sup>63)</sup>. 崔洸 教授는 控除水準의 多段階化에 대해서, 어느 수준 이하까지는(예를 들어 3억원 未滿

0.03%(특히 物的控除의 合計額이 25.19%에 달한다), 其他控除가 13.42%이다.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配偶者控除·子女控除·住宅相續控除이며, 그 외의 控除는 그 비중이 미미하다. 政策의 초점 내지는 완급에 따라서 縮小 내지는 廢止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61) 1993年度의 稅法改正案에서 配偶者의 財産形成寄與度를 감안해서 相續稅 및 贈與稅의 配偶者 控除額을 上向 調整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근의 財産分割請求에 대한 判例에서 離婚의 사유에 관계없이 共同財産의 1/2 정도를 配偶者의 몫으로 認定하고 있음도 이러한 조류와 符合된다고 하겠다.
- 62) 現段階에서는 子息의 父母 奉養이 社會的 規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夫婦와 子息間의 相續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도 큰 問題는 없으나, 核家族化가 계속 進展된다면 이와 같은 形態의 相續은 生存한 配偶者에게 經濟的 問題를 겪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63) 崔洸 教授는 現行的 配偶者控除水準은 우리나라 平均家計의 所得이나 財産形成水準(4인의 家族으로 구성된 한 家口의 財産額을 1億 3,599萬원으로 推定하고, 이 경우 모든 財産을 配偶者가 물려받더라도 相續·贈與稅를 一切 納付하지 않는다)을 감안할 때 그水準이 지나치게 높다고 서술하고 있다(『男女平等의 夫婦財産權 確立과 稅制面에서의 補完方案』, pp. 211~214). 그러나 財産額의 評價時 地價가 상당히 낮게 評價됨에 따라서 財産額도 저평가되었음을 지적한다. 控除額의 多段階化에 대해서는 p. 218 참조.

까지는 ; 1段階 水準이라고 칭하자) 全額 配偶者控除로 인정하고, 中間 水準(예를 들어 3억원 以上 10억원 未滿 ; 2段階 水準이라고 칭하자)에 대하여는 1/2控除制度를 채택하고, 相當 수준 이상(예를 들어 10억원 以上 ; 3段階 水準이라고 칭하자)부터는 配偶者의 法定持分만을 配偶者 控除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方法을 發展시켜서 구체화 시키면 다음과 같다. ① 1段階 水準의 額數까지는 全額 配偶者控除로 인정하고, ② 2段階 水準의 額數에 대하여는 1/2控除制度를 채택하되 1段階 水準의 額數까지는 全額 配偶者控除로 인정하고 이 額數를 초과하는 부분에만 1/2控除制度를 채택하고, ③ 3段階 水準의 액수부터는 配偶者의 法定相續分에 대하여만 配偶者控除로 인정하되 이 法定相續分의 限界額을 정해서 配偶者의 法定相續分이 過多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이 방법은 現行 制度에서 새로운 制度로의 이행을 순조롭게 하면서 동시에 高 所得層에게는 실질적 寄與分만을 인정한다는 長點이 있지만, 制度가 복잡해서 行政需要가 증가하고 또 세 가지 控除方法(一般控除方法, 1/2控除方法 및 法定相續分에 의한 控除方法)이 다 적용됨에 따라서 論理의 一貫性이 缺如되고 있다는 短點이 있다.

셋째, 法定相續分에 의한 控除方法에서 配偶者控除에 대한 最低限度와 最高限度를 설정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다양한 액수로 算定되는 配偶者의 法定相續分 중에서 一定額數 이하(예를 들어서 5億원 이하의 액수)는 法定相續分이 얼마이든지 무조건 法定相續分으로 인정하고(法定相續分 最低限度制)<sup>64)</sup>, ② 다양한 액수로 算定되는 配偶者의 法定相續分 중에서 一定額數까지(예를 들어서 10億원까지만)만 法定相續分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法定相續分 最高限度制)<sup>65)</sup>.

64) 예를 들면, 配偶者의 法定相續分은 3億원이나 實際로는 配偶者가 4億원을 相續받은 경우에는 法定相續分 最低限度 이하이므로 4億원 全額을 配偶者控除로 인정한다.

65) 예를 들어서, 配偶者의 法定相續分이 15億원이지만 이것을 다 配偶者控除로 認定하기에는 問題가 있으므로 最高限度인 10億원까지만 配偶者控除로 認定하고 초과되는 부분인 5億원에는 課稅한다.

이 방법은 일면으로는 配偶者의 老後生活을 보장하고 일면으로는 高所得層에게는 실질적 寄與分만을 인정한다는 長點이 있고, 또한 法定相續分에 의해서 控除額이 산출되므로 租稅行政이 비교적 간단하며, 論理의 一貫性도 있다.

넷째, 配偶者의 法定相續分을 配偶者控除額으로 인정하되, 結婚年數에 따라서 認定하는 比率을 달리하는(예를 들면 結婚年數가 30년 이상이면 法定相續分을 100% 認定하고, 20년이면 80%만을 인정하며, ..., 最低限은 1億원) 案을 상정할 수 있다. 課稅對象의 확대로 稅收의 증대가 기대되나, 高額相續階層에 유리한 短點이 있다.

現行 未成年者控除額은 未成年者가 일정 年齡(예를 들면 成年 등)에 달하기까지의 年數에 1年間의 控除金額을 곱하여 算出되는 金額으로 하는데, 이 1년간의 控除金額을 生活費 및 教育費 등을 고려해서 수시로 調整해야 되며, 또한 一定 年齡을 大學卒業에 필요한 年齡까지로 延長하는 방안을 考慮해야 된다고 사료된다.

現行 障礙者相續控除額은 그 數에 관계없이 각 1인에 대하여 일정액을 75세에 달하기까지의 年數를 곱하여 算出된 金額으로 한다. 現行 制度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治療費에 대응해서 수시로 調整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表 IV -7〉 우리나라 相續財産의 種類別 價額 및 構成

(單位: 百萬원, %)

財産種類	1988		1989		1990		1991		1992	
	金額	비율	金額	비율	金額	비율	金額	비율	金額	비율
土地	136,918	55	233,780	60	420,780	67	519,173	66	1,064,370	77
建物	46,355	19	88,091	23	111,432	18	105,060	13	17,928	13
金融資産	40,995	17	50,098	13	60,993	10	129,704	16	9,020	7
其他資産	23,331	9	17,583	4	32,346	5	41,004	5	5,086	3
合計	247,599	100	389,552	100	625,551	100	794,941	100	1,384,716	100

資料: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1993. 10.

## 라. 其他控除

우리나라의 其他控除에는 住宅相續控除, 農地·草地·山林地 등의 相續控除<sup>66)</sup>, 山林相續控除, 家業相續控除, 贈與稅額控除 및 國外相續財產免除가 있다. 1991年度 이후부터 相續되는 土地에는 公示地價가 적용됨에 따라서 相續財產價額과 相續稅額이 빠른 속도로 增加하고 있다.

日本의 其他控除에는 贈與稅額控除, 短期相續控除 및 外國相續控除가 있으며 獨逸의 其他控除에는 社員出捐控除 및 外國相續額의 控除가 있는데 短期相續免除, 贈與稅額控除 및 外國相續財產免除 등은 외적인 要因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分析에서 제외한다.

小結 : <IV-7>에서 보면 아직까지 相續稅의 주종은 不動產이다<sup>67)</sup>. 1991年度부터 相續되는 土地에는 公示地價를 적용함에 따라서 不動產이 相續財產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더욱 높아진 상황인데, 비록 物的控除의 限度額이 1億원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계속 物的控除가 허용된다면 稅負擔의 水平的 衡平이 저해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物的控除는 特定 資產에 대해서 選別的으로 控除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稅負擔의 水平的 公平성과 資源의 효율적인 配分에 障礙가 되고 있다. 비록 農林水產부가 UR妥結 이후에 物的控除의 계속적인 維持를 요청하고 있지만, 다양한 種類의 物的控除를 短期的으로는 縮小調整하고 長期的으로는 廢止하는 방안을 摸索해야 할 것이다. 특히 控除額이 미미한 일부 控除項目을 중심으로 縮小調整하는 방안을 摸索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第四章의 註 60 參照). <附表 9>에서 보면 日本 相續稅의 주종은 不動產으로서 그 比

66) 이상을 物的控除라 하며 그 限度額은 1億원이다.

67) 相續財產 중에서 不動產의 比重이 높다는 것은 現行 相續制度가 登記制度를 통하여 財產의 移轉이 쉽게 파악되는 不動產 위주로 運用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다른 면으로는 動產 및 金融資產에 대한 稅源의 脫漏가 현저함을 알 수 있다.

率이 76~78%선이지만 物的控除制度를 두고 있지 않음을 참조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金融資産과 其他資産의 捕捉率도 높아져야만 資産間의 衡平性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小結綜合：控除額의 구체적 수준은 사회의 일반적인 通念, 稅收 및 所得再分配 등 각종 政策目標을 綜合的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現行 控除制度에는 各種 控除가 혼재되어 있고, 特定財産을 중심으로 控除가 허용됨으로 인해서 稅負擔의 水平的 公平性과 資源의 效率의인 配分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控除制度가 生存者의 物的 生活 基礎의 保護에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종류의 控除制度가 相續人 특성에 맞는 控除制度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控除額과 控除 種類를 조정해야 한다. 조정시에는 總控除額이 課稅價額에서 차지하는 比率(1992:31.2%)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 즉 控除가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調整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控除의 種類를 축소하면서 基礎控除額의 조정, 配偶者控除額의 조정 내지는 多段階化(3段階) 또는 法定相續分 最低限度制와 法定相續分 最高限度制의 導入, 未成年者控除와 障礙者控除의 수시조정을 조정의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相續財産에서 不動産이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控除額을 조정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에는 不動産價額의 騰落도 고려해야 하고, 다른 資産의 捕捉率도 높여서 衡平性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6. 稅 率

主要國의 稅率構造를 정리하면 <表 IV-8>과 같다.

主要國의 相續稅 稅率을 보면 우리나라는 10~50%의 超過累進稅率, 美國은 18~55%의 超過累進稅率, 英國에서는 40%의 比例稅率, 獨逸은 3~35%(20~70%)의 單純累進稅率, 日本은 10~70%의 超過累進稅率로 되어 있다(<表 IV-8> 參照).

<表 IV-8> 主要國의 稅率構造 比較

(單位: %)

		遺 產 課 稅 型			取 得 課 稅 型	
		美 國 (統合型)	英 國 (分離型)	우리나라 (分離型)	獨 逸 (統合型)	日 本 (分離型)
相續課稅	稅 率 構 造	超過累進	比 例	超過累進	單純累進	超過累進
	最高課稅階級	\$300萬	£15萬 초과	10億원	DM 1億	¥10億
	最低課稅階級	\$1萬	£15萬 이하	5千萬원	DM 5億	¥7千萬
	最高名目稅率	55%	40%	50%	35,50,65,70%	70%
	最低名目稅率	18%	nil	10%	3,6,11,20%	10%
贈與課稅	累 進 階 級	16	1	5	25	13
	最高課稅階級	위 相續 課稅와 같다	위 相續 課稅와 같다	5億원	위 相續 課稅와 같다	¥1億
	最低課稅階級	위 相續 課稅와 같다	위 相續 課稅와 같다	2千萬원	위 相續 課稅와 같다	¥150萬
	最高名目稅率	上同	20%	55%	上同	70%
	最低名目稅率	上同	nil	15%	上同	10%
生前贈與의 死亡 遺產合算課稅 期間	累 進 階 級	上同	1	5	上同	13
	生前贈與의 死亡 遺產合算課稅 期間	平生	7年	5年 또는 3年	10年	3年
贈與와 贈與의 累積合算課稅 期間	平生	7年	5年 또는 3年	10年	없음	

註: 1. 韓國, 美國 및 日本은 1994년 1월 현재 施行되는 法에 의했으며, 英國과 獨逸은 1992年 1月 현재 施行되는 法에 의했다.

2. 韓國의 贈與課稅는 取得課稅型이다.

3. 獨逸은 親等親疎에 따른 4개 租稅等級에 따라 差別稅率을 적용함.

4. 英國은 tapering relief를 적용함.

資料: 崔明根, 前掲書, p. 85에서 재인용.

稅率의 構造는 時代的인 背景, 國民性 및 徵稅技術의 水準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相續課稅의 稅率은 相續課稅를 保護하고 補完하는 제도인 贈與課稅의 稅率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相互 補完的인 관계 속에서 稅率構造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兩者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면 贈與誘引的인 것, 贈與抑制的인 것 및 中立的인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生前移轉에 대한 稅率이 死亡遺産에 대한 稅率보다 낮아서 贈與가 촉진된다면 贈與誘引的인 構造라고 할 수 있고 (英國이 여기에 해당한다), 生前移轉에 대한 稅率이 死亡遺産에 대한 稅率보다 높아서 贈與가 抑制된다면 贈與抑制的인 構造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日本이 여기에 해당한다), 生前移轉과 死亡遺産에 대한 稅負擔이 동일해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中立的인 構造가 될 것이다 (美國과 獨逸이 여기에 해당한다).

民間部門의 經濟行爲를 歪曲시키지 않는 稅制가 바람직하므로, 贈與稅의 부담수준이 生前贈與를 촉진하거나 抑制하는 것도 모두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富의 保有者가 그의 財産을 無償處分하는 자유에 대하여 中立的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贈與稅 부담수준이 바람직할 것이며, 그것은 稅率을 一元化해서 單一稅率表에 의하여 課稅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sup>68)</sup>.

韓國의 相續稅와 贈與稅는 課稅類型은 다르나 最高課稅階級을 보면 贈與稅는 相續稅의 반임에도 불구하고 累進階級은 같아서 그 累進度가 급격하며, 最高名目稅率을 보면 贈與稅가 相續稅보다 5% 포인트나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또 最低課稅階級을 보면 贈與稅는 2千萬원으로서 相續稅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다(〈表 IV-8〉參照). 따라서 우리나라의 相續課稅制度는 贈與를 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8) 崔明根, 前揭書, p. 90.

獨逸에서는 納稅義務者를 被相續人 또는 贈與者와의 身分上的 關係에 따라서 分類해서 各 分類別로 적용되는 一般控除額과 稅率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日本에서는 被相續人의 1等親 外的 者가 相續時에는 20%를 加算하고 있다. 즉 兩國은 被相續人 또는 贈與者와의 親族關係의 遠近에 따라 相續人 또는 受遺者의 控除額과 稅率에 차등을 두고 있다(가까운 親族關係일수록 優待함)<sup>69)</sup>.

이와 같이 親族關係의 遠近에 따른 差等稅率을 적용하는 문제<sup>70)</sup>에 대해서는 肯定하는 見解와 否定하는 見解가 대립되어 있는데, 崔明根 教授는<sup>71)</sup> 첫째, 取得財産의 客觀的 價値는 같음에도 불구하고 無償移轉者와 無償取得者間의 親族關係의 遠近에 의하여 조세부담상 輕重의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성이 없으므로 應能負擔의 原則과 親族關係의 遠近에 따른 差等稅率 설정은 서로 조화될 수 없으며 둘째, 無償移轉者와 親族關係가 가까운 者가 相續 등에 의해 取得하는 遺産에 대해 輕減된 稅率을 적용하여 과세상 우대한다면 오히려 近親直系集團 內로 富의 集中을 유인하게 되어서 富의 分散과도 조화되지 않으며, 특히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富의 集中抑制에 대한 國民적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親族關係의 遠近에 따른 差等稅率의 설정은 國民적 합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며 셋째, 親族關係의 遠近에 따른 差等稅率을 뒷받침해온 논거는 家族共同體의 보호였는데, 이러한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예로 든다면 基礎控除·配偶者控除 및 未成年者控除 등이 있으므로, 差等稅率制度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69) 이는 相續人 또는 受贈者가 被相續人 또는 贈與者와의 血緣關係의 遠近에 따라 課稅上 구별하는 理論과 符合하지만, 그러나 相續課稅의 주된 目的이 富 또는 經濟力의 集中을 緩和시키는 데 있다고 한다면 血緣關係의 遠近에 따른 差別課稅理論은 그 함이 弱화된다고 할 수 있다.

70)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31일의 稅法改正으로 被相續人의 1付 以外的 直系卑屬이 相續時에는 20%를 加算하고 있다.

71) 崔明根, 前揭書, pp. 86~88.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親族關係의 遠近에 따른 差等稅率制度和 被相續人의 1寸 以外的 直系卑屬이 相續時에는 20%를 加算하는 규정은 再考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sup>72)</sup>.

〈表 IV-9〉 相續稅의 稅率體系 改善方案 比較

	第 1 案	第 2 案	第 3 案
相 續 稅 稅 率 體 系	贈與稅率에 統合 2千萬元 이하:15% 1.5億元 이하:25% 3億元 이하:35% 5億元 이하:45% 5億元 초과:55%	贈與課稅區間, 5% 引下 2千萬元 이하:10% 1.5億元 이하:20% 3億元 이하:30% 5億元 이하:40% 5億元 초과:50%	새로운 稅率體系 2千萬元 이하:10% 5千萬元 이하:20% 1億元 이하:30% 2億元 이하:40% 2億元 초과:50%
稅 負 擔 效 果	配偶者 控除惠澤은 現在보다 늘어나지만 相續稅 稅負擔은 다소 減少한다.	配偶者 控除惠澤은 現在보다 늘어나지만 相續稅 稅負擔은 크게 減少한다.	相續稅 稅負擔은 대체 적으로 1案과 비슷하며, 贈與稅 稅負擔은 다소 減少한다.

小結: 相續課稅의 稅率은 贈與課稅의 稅率과 相互 補完的인 關係 속에서 稅率構造가 결정됨이 일반적이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相續課稅制度의 稅率構造는 贈與를 억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非中立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富의 保有者가 그의 재산을 無償處分하는 자유에 대하여 中立的인 影響을 미치는 同一稅率體系(統合稅率體系일 수도 있고, 分離稅率體系일 수도 있음)를 적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現행의 遺產課稅型에서 取得課稅型으로 轉換하면서 同一稅率體系를 적용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며, 어떤 稅率體系를 설정할지는 그때의

72) 그러나 우리나라와 日本의 이러한 制度는 世代省略移轉稅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여러 가지 要因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세 가지의 代案을 고려할 수 있다(〈表 IV-9〉, 〈表 IV-10〉 參照). 第1案은 相續稅의 稅率體系를 現行 贈與稅의 稅率體系(15~55%)로 統合하여 課稅하는 것인데, 現行 制度에서 새로운 制度로의 이행이 比較的 순조롭지만 이 경우 배우자의 公제 혜택이 현재보다 늘어나고 相續稅의 稅負擔은 현재보다 상당히 減少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경우 相續稅의 最高稅率이 55%로 引上된다는 短點이 있다.

〈表 IV-10〉 取得課稅型으로 轉換에 따른 相續稅額 比較

(單位: 億원)

相續 財產	遺產課 稅型相 續稅額	第 1 案		第 2 案		第 3 案	
		相續稅額	配偶者 控除稅額	相續稅額	配偶者 控除稅額	相續稅額	配偶者 控除稅額
10	0.60	1.95	0.98	1.56	0.78	2.36	1.18
20	4.65	5.74	1.44	4.85	1.21	7.17	1.79
30	9.65	10.55	2.69	9.17	2.34	12.17	3.10
40	14.65	16.05	4.01	14.17	3.54	17.17	4.29
50	19.65	21.59	4.32	19.18	3.84	22.18	4.44
60	24.65	27.05	4.51	24.18	4.03	27.18	4.53
70	29.65	32.55	4.65	29.15	4.16	32.15	4.59
80	34.65	38.05	4.75	34.15	4.27	37.15	4.64
90	39.65	43.55	4.84	39.15	4.35	42.15	4.68
100	44.65	49.05	4.91	44.15	4.42	47.16	4.72

- 註: 1. 結婚年數는 30年, 子女는 4名으로 假定하여 7億원(基礎控除, 住宅控除, 配偶者控除, 子女控除)을 相續財產에서 控除하여 現行 相續稅率에 따라 相續稅額을 계산했음.
2. 各 代案에서는 相續財產에서 基礎控除로 2億원(住宅控除 1億원 포함)을 控除한 相續財產額에서 相續人의 法定持分으로 나는 課稅價額에 각각의 稅率로 相續稅額을 計算하였음.
3. 配偶者 控除稅額으로 控除稅額의 最高限度를 구하였으며, 配偶者는 相續稅額(配偶者 課稅價額/相續財產價額)에서 配偶者 控除稅額을 차감한 金額을 納付하게 됨.
4. 各 案의 相續稅額에서는 아직 配偶者 控除稅額을 차감하지 아니하였음.

第2案은 相續稅의 稅率體系를 贈與稅의 課稅區間에 맞추고 세율은 5% 引下하는 것(10~50%)인데, 이 경우 配偶者의 控除惠澤이 현재보다 늘어나지만 相續稅의 稅負擔이 대폭 줄어들어 전반적인 相續稅 課稅機能이 약화될 것이다.

第3案은 相續稅의 稅率은 現行 稅率을 유지하되 課稅區間은 取得課稅型에 맞게 下向調整하면서 贈與稅와 稅率體系를 통합하는 새로운 稅率體系인데, 이 경우 相續稅의 稅負擔은 課稅區間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第1案과 비슷할 것으로 사료된다<sup>73)</sup>. 그러나 贈與稅의 稅負擔은 현재보다 다소 減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法定相續分 課稅方式으로 전환하고 配偶者 控除規模를 확대하면서도 相續稅 機能을 크게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第1案 또는 第3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7. 稅額控除 및 免除

우리나라는 現行 相續稅制는 성실한 申告를 유도하기 위하여 申告期間 內에 相續稅申告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을 控除하고 있는데 租稅行政이 進一步했고, 納稅意識도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賦課主義에서 申告主義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廢止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贈與稅額控除, 短期相續控除 및 外國相續控除 등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73) <表 IV-9>에서 第1案과 第3案에 의해서 算出된 相續稅負擔을 比較해 보면, 相續財產價額이 60億원 이하인 경우에는 第3案에 의해서 算出된 相續稅負擔이 무겁고, 相續財產價額이 70億원 이상인 경우에는 第1案에 의해서 算出된 相續稅負擔이 무겁다.

## 8. 申告納付

6個月 內 신고 규정은 租稅行政이 進一步했고, 納稅意識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그 期間의 延長보다는 現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年賦延納, 物納 및 加算稅 규정도 現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9. 未分割遺產

現行 相續稅制에서는 규정이 없으나 우리나라 民法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民法에는 民法上 相續人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그 共同 相續財產은 共有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sup>74)</sup>. 즉, 民法上 相續開始로 相續財產은 法律上 당연히 相續人에게 承繼되나, 相續財產을 共同相續人 사이에서 分割하려 해도 相續開始와 分割 사이에는 다소간의 시간적 간격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으므로, 民法에서는 分割이 있을 때까지는 相續財產은 暫定的·過渡的으로 共同相續人의 共有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共有關係는 각 共同相續人에게 相續分에 따라서 相續財產을 適正·妥當하게 分배하는 것을 前提로 한 豫備의 措置이므로 相續稅申告書 提出期限까지 遺產이 分割되지 않았을 때에는 法定相續分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상속세액을 算出·賦課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取得課稅型으로 전환해서 法定相續分 課稅方式을 채택했을 시에는 相續稅總額에는 차이가 없고 단지 各 相續人의 稅額만 사후에 조정하면 될 것이다.

---

74) (韓國) 民法 第1006條 참조.

또한 取得課稅型으로 전환시에는 日本의 未分割遺産에 대한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現行 日本의 相續稅制에서는 相續稅申告書 제출 기한까지 遺産의 全部 또는 一部가 分割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分割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각 共同相續人 또는 包括受遺者가 民法의 규정에 의한 相續分 또는 包括遺贈의 비율에 따라 그 財産을 取得한 것으로 보고 相續稅 課稅價格을 계산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臨時計算(假定計算)이므로 이후에 實際分割이 있는 경우에는 그 實際分割에 의하여 取得한 財産價額에 따라 申告書を 提出 또는 更正請求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75)</sup>.

小結：取得課稅型으로 전환시에는 우리나라 民法의 규정을 원용하면서 日本의 現行 相續稅制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民法에서는 分割이 있을 때까지는 相續財産은 暫定的·過渡的으로 共同相續人의 共有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共有關係는 각 共同相續人에게 相續分에 따라서 相續財産을 適正하고 妥當하게 分配하는 것을 前提로 한 豫備的 措置라고 할 수 있으므로 相續稅申告書 提出期限까지 遺産의 全部 또는 一部가 分割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分割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는 각 共同相續人 또는 包括受遺者가 法定相續分 또는 包括遺贈의 비율에 따라 그 財産을 取得한 것으로 간주해서 相續稅額을 산출하는 方法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臨時計算에 불과하므로 이후에 實際分割이 있는 경우에는 그 實際分割에 의하여 取得한 財産價額에 따라 申告書を 提出 또는 更正請求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相續稅制가 取得課稅型으로 전환해서 法定相續分 課稅方式을 채택했을 시에는 [圖 IV-4]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方法에 의해서 相續稅總額을 산출해도 거기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며, 단지 各 相續人이 實際分割에

75) (韓國) 相續稅法 第55條 및 그 但書.

의하여 取得한 財産價額에 따라 申告書를 提出 또는 更正請求를 했을 때에 稅額만 조정하면 될 것이므로 行政이 간편하다고 할 수 있다.

## 10. 相續稅와 贈與稅의 統合課稅 與否

우리나라의 相續課稅制度의 特徵은 相續財産에 대한 課稅에서는 遺産課稅型의 相續稅를 채택하면서도 贈與에 대한 課稅에서는 取得課稅型의 贈與稅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相續稅와 贈與稅의 關係를 보면 贈與稅는 相續稅의 回避 방지에 그 기본적인 기능을 두고 있으므로, 贈與稅의 본질은 相續稅의 補完稅라고 할 수 있다. 즉 贈與稅는 贈與에 의한 租稅回避로부터 相續稅를 保護하고 補完하는 課稅制度인 것이다<sup>76)</sup>.

이와 같은 補完機能을 現行 制度에서 찾아보면, 贈與財産 相互間의 累積合算期間 및 死亡遺産의 贈與財産 合算課稅期間을 짧게 設定하고, 그 불충분성을 높은 贈與稅 稅率로 대처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生前移轉에 의해 相續稅 稅率의 높은 限界稅率 적용회피로 節稅하려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를 지나서 生前移轉 그 자체에 懲罰的 課稅를 하여 封鎖하는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贈與를 아예 封鎖하는 것이 賢策인가? 平均壽命이 점점 길어져 가는 추세에서 富의 生前移轉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면 富의 所有者는 사망할 때까지 財産을 스스로 보유하게 되는 富의 凍結效果가 일어난다. 富는 다음 世帶가 壯年일 때 그에게 移轉되어야 國民經濟가 활성화되는 것이므로(〈表 IV-9〉에서 보면 40대에서 50대 중반 사이에 經濟活動이 가장 왕성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相續稅와 贈與稅를 統合型으로 전환해야 하며<sup>77)</sup>, 또한 生前移轉과

76) 崔明根, 前揭書, p. 79.

77) 上揭書, pp. 82~83.

死亡遺産에 대한 稅負擔이 동일해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中立的인 單一稅率體系가 되어야 할 것이며, 相續開始 前에 받은 贈與財産을 相續稅 賦課時에 累積合算하는 기간도 一定期間 동안은 現行制度를 유지하다가 電算網이 완비되고 상당한 노후자가 축적된 후 10年으로 延長해야 할 것이다.

〈表 IV-11〉 家口主 年齡別 家口當 月平均 家計收支(1992)

(單位: 歲, 千圓)

	平均	24이하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이상
總收入	2335.0	1544.2	1915.4	2188.8	2428.3	2539.5	2716.1	2667.6	2398.1
總支出	2335.3	1544.1	1918.7	2183.8	2441.1	2541.0	2708.9	2662.5	2390.7

資料: 統計廳, 『都市家計年報』, 1993.

現行 贈與稅가 이미 取得課稅型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相續稅가 取得課稅型으로 轉換한다면 統合課稅는 매우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現行 贈與稅의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稅率體系만 調整하면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小結: 相續稅와 贈與稅의 相互補完的인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兩稅制를 統合型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다. 만약 取得課稅型으로 전환하면서 統合型을 취한다면 現行 贈與稅는 이미 取得課稅型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나, 稅率體系는 二元化되어 있어서 一元化할 필요가 있다. 그 稅率構造는 生前移轉을 유인해서는 안 되고, 生前移轉에 負의 誘引效果(disincentive)를 미쳐서도 안 되며 中立的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볼 때 遺産課稅型에서 取得課稅型으로 전환하면서 統合稅率體系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取得課稅型下에서는 相續財産이나 贈與財産이나 다 똑같은 擔稅能力을 지닌다고 볼 수 있으므로 統合稅率體系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 몇 段階의 超過累進構造를 취할지는 우리의 環境要因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며, 그 대안에는(〈表 IV-10〉 參照) 첫째, 現行 贈與稅 稅率體系를 統合稅率體系로 사용하는 方案(第1案) 둘째, 現行 贈與稅 稅率을 5% 인하한 稅率體系를 統合稅率體系로 사용하는 方案(第2案) 셋째, 새로운 超過累進構造의 稅率體系를 설정하는 方案(第3案) 등을 상정할 수 있는데, 第1案 또는 第3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V. 要約 및 政策示唆點

지난 3,40년 동안 우리나라가 급속한 經濟成長을 이룩하면서 富의 分配問題가 社會問題로 대두되고 富의 集中 抑制 및 公平課稅에 대한 國民的 輿望이 강하게 噴出되면서 相續稅制가 갖는 重要性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富의 集中 抑制와 應能負擔을 실현하며 또한 公平課稅를 실현할 수 있도록 相續課稅 機能의 提高가 요청되는데, 그 方案으로서 現行 相續課稅制度인 遺產課稅型에서 取得課稅型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取得課稅型 相續課稅制度에는 富의 分散誘引機能이 내재되어 있어서 經濟的 不均衡의 是正에 유리하고, 擔稅能力이 遺產의 無償取得者를 기준으로 測定·課稅되므로 應能負擔의 原則에 부합되며 또한 公平課稅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등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長點이 있다. 따라서 富의 分散促進 및 公平課稅에 대한 國民的 輿望과 應能負擔의 現實이라는 租稅政策을 고려한다면, 取得課稅型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取得課稅型(특히 純粹取得課稅型) 相續課稅制度로 轉換하기 위해서는 現在의 相續慣行·相續登記制度 및 名義信託制度 등이 改善되어서 遺產의 偽裝分割相續을 防止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稅務行政이 완전히 電算化되어서 相續稅 關聯 行政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前提條件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現 段階에서는 이와 같은 前提條件의 충족이 미흡해서 「純粹取得課稅型」으로 轉換時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비록 稅務行政上의 부담이 조금 더 增加한다는 問題點은 있지만 現 段階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어려움을 防止할 수 있는 遺產課稅型과 取得課稅型의 折衷型인 「法定相續分 課稅方式에 의한 取得課稅型」을 우선 채택하고, 향후 相續慣行·相續登記制度 등이 개선되고 國稅行政이 뒷

받침될 때 「純粹取得課稅型」으로 전환하는 方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本稿에서는 遺產課稅型和 取得課稅型の 折衷型인 「法定相續分課稅方式에 의한 取得課稅型」으로의 轉換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轉換에 대비한 具體的인 方案 提示를 도모했는데, 그 分析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納稅義務者에 대해서는, 現行法の 골격을 유지해서 相續·遺贈에 의하여 財産을 取得하는 者, 死因贈與에 의하여 財産을 취득하는 者 및 法人格 없는 社團·財團 등에게 納稅義務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한편 取得課稅型 相續稅制下에서는 분할된 財産의 각 持分이 課稅對象이 되므로 取得課稅型으로 전환시에는 擔稅力을 相續人(無償取得者) 기준으로 계산해서 相續人의 住所를 중심으로 無制限納稅義務와 制限納稅義務로 구분하고, 住所가 國內에 있는 경우에는 無制限納稅義務, 住所가 國內에 없는 경우에는 制限納稅義務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民法과 國稅基本法에는 連帶納付義務가 규정되어 있고, 또한 現行 相續稅가 遺產課稅型이지만 取得者別 課稅主義에 입각한 連帶納付義務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遺產課稅型的 과세방법을 사용했다기보다는 오히려 民法과 國稅基本法の 法理를 연장해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取得課稅型으로 전환시에도 現行 相續稅法の 規定이 이미 取得者別 課稅主義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치 않으며, 또한 이것은 民法 및 國稅基本法の 法理와도 부합하게 된다.

3. 現行 相續稅法에서는 被相續人의 住所地 所管 稅務署를 納稅地로 하고 있는데, 相續稅法을 取得課稅型으로 전환하더라도 즉시 相續人(受遺者)의 住所地를 중심으로 所管 稅務署 및 納稅地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당분간은 稅務行政의 便宜를 고려해서 現行 制度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不服請求는 稅務行政의 便宜를 위해서 相續人 住所地 所管 稅務署에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4. 새로운 相續課稅體系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遺產總額에서 分割된 각각의 몫을 課稅對象으로 하며 둘째, 여기에 超過累進稅

率을 적용하며 셋째, 遺産의 偽裝分割相續을 방지하기 위해서 法定相續分課稅方式을 도입하며 넷째, 基礎控除만 課稅價額控除方式에 의하고 나머지는 稅額控除方式(그 控除額은 現行 控除額에 상응하도록 調整함)에 의해서 차감하는 것이다. 구체화시키면, 總課稅價額의 算出 → 課稅되는 遺産總額의 算出 → 相續稅總額의 算出 → 各人の 相續稅額(算出稅額)의 算出 → 各人の 納付稅額의 算出의 5단계로 구성된다.

또한 相續課稅 行政水準이 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었고, 除斥期間이 10년으로 연장되었지만 相續稅 關聯 電算網이 완비되지 못한 상황하에서는 行政的인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取得課稅型으로 전환하더라도 相續開始 前에 贈與받은 財産의 累積合算課稅期間을 일정기간 동안은 現行 制度대로 유지하다가 電算網이 완비되고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된 후에 累積合算課稅期間을 10년으로 설정해서 少額으로 分割贈與하는 방법에 의하여 相續稅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할 것이다.

5. 控除額의 具體的 水準은 각종 政策目標를 綜合的으로 고려해서 결정되며, 또한 控除制度를 통해서 相續稅 負擔의 水位를 調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어떤 종류의 控除制度가 生存者의 物的 生活基礎의 保護에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종류의 控除制度가 相續人의 特性에 맞는 控除制度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控除額과 控除 種類를 조정해야 한다. 調整 때에는 總控除額이 相續稅 課稅價額에서 차지하는 비율(1992; 31.20%)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달해서 각종 控除가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控除의 種類를 縮小하면서 基礎控除額의 調整, 配偶者控除額의 調整 내지는 多段階化(3段階) 또는 法定相續分 最高限度制와 法定相續分 最低限度制의 導入, 未成年者控除와 障礙者控除의 수시 調整을 基本 方向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不動產價格의 變動을 고려하면서 다른 資產의 捕捉率도 높여서 資產間의 衡平性도 도모해야 할 것이다.

基礎控除制度는 비록 取得課稅型에 부합되지 않는 制度이지만 取得課稅型으로 전환시에는 配偶者가 없는 경우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계속 存

續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控除額은 1인당 課稅價格 및 相續稅收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서 그 水準을 설정해야 하는데, 中產階層과 그 以下階層의 物的 生活基礎 保護라는 政策的인 側面에서는 전반적으로 日本에 비해서 미흡하다고 할 수 있고, 또 각종 物的控除의 축소가 예상되므로 基礎控除의 水準을 上向調整해야 하는데, 有住宅者와 無住宅者 사이의 水平的 衡平性 提高를 위해서 住宅控除를 廢止하고 이 價格을 基礎控除에 포함시켜서 2배까지 上向調整하는 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人的控除의 種類가 다양해서 政策意志 내지는 政策에 대한 告知效果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그 種類를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相續人의 特性에 맞는 控除制度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生存家族의 생활안정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控除方法도 稅額控除方式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控除額은 現行 控除額에 상응하도록 調整되어야 할 것이다. 現行 配偶者控除制度의 改善方案 중에서 法定相續分에 의한 控除方法에서 配偶者控除에 대한 法定相續分 最低限度(配偶者の 法定相續分 중에서 一定額數 이하는 무조건 法定相續分으로 인정)와 法定相續分 最高 限度(배우자의 法定相續分 중에서 一定額數까지만 法定相續分으로 인정)를 설정하는 方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現行 未成年者控除額은 生活費 및 教育費 등을 고려해서 수시로 調整해야 되며, 또한 一定 年齡을 大學卒業에 필요한 年齡까지로 延長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고, 障礙者相續控除額은 그 골격을 유지하면서 治療費에 대응해서 수시로 調整해야 할 것이다.

物的控除의 限度額이 1億원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계속 허용된다면 稅負擔의 水平的 衡平이 저해되고 資源의 效率의인 배분에 장애가 될 것이므로 物的控除의 종류를 短期的으로는 縮小調整하고(住宅控除를 基礎控除에 흡수시킴) 長期的으로는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控除方法이 稅額控除方式으로 전환되므로 그 控除額이 現行 控除額에 상응하도록 調整되어야 할 것이다.

6. 富의 保有者가 그의 財産을 無償處分하는 자유에 대하여 中立的인 영향을 미치게 될 相續稅와 贈與稅를 통합한 同一稅率體系(統合稅率體系일 수도 있고, 分割稅率體系일 수도 있음)가 바람직한데, 現行의 遺產課稅型에서 取得課稅型으로 전환하면서 同一稅率體系를 적용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몇 단계의 超過累進構造를 설정할지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相續稅의 稅率體系를 現行 贈與稅의 稅率體系로 統合하여 課稅하는 方案(第1案) 또는 相續稅의 稅率은 現行 稅率을 유지하되 課稅區間은 取得課稅型에 맞게 下向調整하면서(稅收의 減少를 防止할 수 있음) 贈與稅와 稅率體系를 통합하는 方案(第3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만약 法定相續分 課稅方式으로 轉換時에 발생하는 稅務行政上의 負擔-行政需要 增加- 및 應能課稅의 原則이 미흡하다는 점이 問題로 제기된다면, 일정기간 동안 現行 相續課稅制度를 유지하면서 最高稅率을 所得稅의 最高稅率水準으로 調整하고 配偶者控除制度를 合理化했다가 이후 遺產의 偽裝分割相續 防止와 稅務行政의 電算化라는 前提條件이 충족되면 法定相續分 課稅方式을 거치지 않고 직접 純粹取得課稅型으로 轉換하는 方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7. 우리의 民法에는 共有의 규정이 있고 日本의 現行 相續稅制에는 未分割遺產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兩者를 원용해서 相續稅申告書 제출기한까지 遺產의 全部 또는 一部가 分割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分割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는 각 共同相續人 또는 包括受遺者가 法定相續分 또는 包括遺贈의 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相續稅額을 산출하도록 한다. 단, 이것은 臨時計算에 불과하므로 이후에 實際分割이 있는 경우에는 그 實際分割에 의하여 취득한 財産價額에 따라 申告書를 提出 또는 更正請求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相互補完的인 관계에 있는 相續稅와 贈與稅를 統合課稅型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운용의 效率性을 제고시킬 수가 있다. 특히 取得課稅型下에서는 相續財産이나 贈與財産이나 다 똑같은 擔稅力을 지닌다고 볼 수 있으므로 取得課稅型으로 전환하면서 統合課稅型을 취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現行 贈與稅는 이미 取得課稅型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統合課稅型下에서도 그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나, 二元化되어 있는 稅率體系는 재산을 無償處分하는 자유에 대하여 中立的인 영향을 미치게 될 統合稅率體系로 전환해야 한다. 몇 가지의 代案 중에서 相續稅의 稅率體系를 現行 贈與稅의 稅率體系로 統合하여 課稅하는 方案(第1案) 또는 相續稅의 稅率은 유지하되 課稅區間은 取得課稅型에 맞게 下向調整하면서 贈與稅와 稅率體系를 統合하는 方案(第3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統合課稅型으로 전환되면 相續稅의 회피 방지를 위해서 富의 生前移轉(贈與)에 대해 억제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는 現行 制度가 中立的인 稅制로 될 것이며, 따라서 富가 자연스럽게 이전되고 國民經濟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9. 기타사항으로 稅額控除 및 免除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申告納付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6個月)을 유지하는 것이, 年賦延納·物納 및 加算稅 규정도 현행 규정을 유지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參 考 文 獻

國稅廳,『國稅統計年報』,各年度.

稅制發展審議委員會 財產課稅制度研究分科委員會,『民法改正과 관련한  
相續稅制 補完方案 및 遺產稅를 遺產取得稅制로 改編하는 方  
案』,1991. 4.

安鍾範,『金融實名制와 國民經濟』,韓國租稅研究院,1993.

李光宰,『相續·贈與稅의 理論과 實務』,서울:稅經社,1992.

李泰魯,『租稅法概論』,전정관,租稅通覽社,1992.

財務部 稅制室 國際租稅課,『日本の 稅制概要』,1993.

———,『日本の 國稅 解說』,1993.

崔 洸,『男女平等의 夫婦財產權 確立과 稅制面에서의 補完方案』,政策  
資料 94-2,政務長官(第2)室,1994.

崔明根,『相續課稅論』,稅經社,1990.

———,『取得課稅型 相續課稅制度 導入方案에 관한 研究』,韓國租稅研  
究院,1993.

韓國租稅研究所,『主要國의 相續課稅制度』,韓國租稅研究所,1989.

韓國租稅研究院(編譯),『G7의 稅制』,1994.

日本 國稅廳,『第117回 國稅廳統計年報書』,東京:財團法人 大藏財務協  
會,1993.

大藏省主計局調查課,『財政統計』,東京:大藏省印刷局,1992.

本間正明·跡田直登,『稅制改革の實證分析』,東京:東洋經濟新聞社,  
1989.

日本公認會計士協會東京會,『新版 各國の租稅制度の解説:主要15カ國  
の稅制の實態』,東京:中央經濟社,1989.

日本稅法學會運營委,『西ドイツ相續稅法』,東京:勁草書房,1974.

日本銀行國際局,『外國經濟統計年報』,東京:日本信用調査株式會社 出版部,1993.

田口 豊,『新版 相續稅法』,東京:稅務經理協會,1993.

鶴田廣已・藤岡純一,『稅制改革への視點』,東京:中央經濟社,1988.

## 附 錄

〈附表 1〉 獨逸의 納稅義務者 分類

	納 稅 義 務 者
第 1 類	① 配偶者 ② 子女 및 繼子女 ③ 死亡한 子女 또는 繼子女의 子女
第 2 類	① 第1類 2호의 者의 直系卑屬으로서 第3類에 속하지 아니하는 者 ② 父母 및 기타의 直系尊屬(相續의 경우에 限한다)
第 3 類	① 第2類에 속하지 아니하는 父母 및 기타 直系尊屬 ② 兄弟姊妹 ③ 兄弟姊妹의 1寸의 直系卑屬 ④ 繼父母 ⑤ 子女의 配偶者 ⑥ 配偶者의 父母 ⑦ 離婚한 配偶者
第 4 類	기타의 모든 取得者 및 目的出捐을 받은 者

註：相續·贈與稅法 第15條 第1項에 의거하여 작성했다.

〈附表 2〉 年度別 死亡者 및 課稅件數比率의 韓·日間 比較

(單位：%)

	1988	1989	1990	1991
韓 國	0.53	0.73	0.97	1.21
日 本	4.54	5.32	5.85	-

註：1. 統計廳의 「人口動態年報」(1993)와 國稅廳의 「國稅統計年報」(1993)에 의거 작성.

2. 日本은 財務部의 資料에서 인용.

〈附表 3〉 우리나라의 GNP, 國稅 및 相續稅 徵收額

(單位: 億圓, 名, %)

	GNP (A)	國稅 (B)	相續稅徵收額 (C)	C / A	C / B
1988	1,262,305	194,842	360	0.03	0.18
1989	1,417,944	212,341	395	0.03	0.19
1990	1,714,881	268,474	710	0.04	0.26
1991	2,066,812	303,198	1,044	0.05	0.34
1992	2,229,385	352,184	1,750	0.08	0.50

資料: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93.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1993.

〈附表 4〉 우리나라 相續稅 控除額의 推移

(單位: 萬圓)

	基礎控除	配偶者控除	子女控除	未成年者控除	年老者控除	障礙者控除
1961	50	5	-	5	5	5
1968	150	50	-	$20 + 5 \times B$	20	20
1972	300	150	-	$20 + 5 \times B$	40	40
1975	600	500	-	$30 + 10 \times B$	60	60
1977	800	800	-	$24 \times B$	100	180
1980	800	1,600	-	$24 \times B$	100	180
1983	1,000	2,000	500	$40 \times B$	300	800
1989	1,000	4,000	1,000	$100 \times B$	1,000	1,000
1991	6,000	$10,000 + 600 \times A$	2,000	$300 \times B$	3,000	$300 \times C$
1994	10,000	$10,000 + 1,200 \times A$	2,000	$300 \times B$	3,000	$300 \times C$

註: 1. 配偶者控除欄의 A는 結婚年數를 말하고,

2. 未成年者控除欄의 B는 20歲에 달하기까지의 年數를 말하고,

3. 障礙者控除欄의 C는 75歲에 달하기까지의 年數를 말한다.

資料: 韓國租稅研究院.

### 〈附表 5〉 日本의 相續稅 關聯 指標

(單位：億圓)

	GNP	國稅	相續稅總額
1987	2,817,894	478,068	23,775 (14,343)
1988	2,995,894	521,938	27,932 (15,629)
1989	3,202,186	571,361	37,996 (23,930)
1990	3,429,676	627,798	45,799 (29,527)
1991	3,589,991	632,110	61,560 (39,651)

註：1. GNP는 經濟企劃廳의 『國民經濟計算(新SNA)』에 의한 實績值이다.

2. 國稅는 決算額이다.

3. 相續稅總額이란 控除額을 差減하기 前의 額數이다(〔圖 IV-1〕參照).

4. ( ) 안은 納付稅額으로서 相續稅總額을 個人別로 按分하고 다시 各種控除 및 納稅猶豫額 등을 차감해서 구한다.

資料：日本 國稅廳(編), 『平成3年度版 國稅廳統計年報書』, 1993. 5.

### 〈附表 6〉 日本 相續稅 年度別 課稅狀況

(單位：千名, 億圓, %)

	死亡者數 ①	被相續人 課稅分 ②	課稅價格	相續稅額	②/①
1985	752	48	62,463	9,261	6.4
1986	751	52	67,637	10,443	6.9
1987	751	59	82,509	14,343	7.9
1988	793	36	96,380	15,629	4.6
1989	789	42	117,686	23,930	5.3
1990	820	48	141,058	29,527	5.9

資料：日本 國稅廳(編), 『平成3年度版 國稅廳統計年報書』, 1993. 5.

## 〈附表 7〉 日本의 相續稅 課稅狀況(1991)

(單位: 名, 億円)

	相續人數	金額
取得財産價額	183,794	194,283
債務控除額	84,850	16,604
贈與財産價額加算	13,742	739
課稅價格	實 183,567	178,427
相續 一算出稅額	179,555	61,333
稅額 20%加算額	6,210	227
一計	實 179,555	61,560
稅額 贈與稅	7,359	254
控除 配偶者	33,468	16,443
未成年者	4,839	37
障礙者	2,568	33
短期相續	7,458	271
外國稅額	4	2
一計	實 51,846	17,040
精算稅額	實 161,712	44,520
納稅猶豫額	7,045	4,869
納付稅額	實 154,888	39,651
基礎控除額	實 56,554	39,862

註: 1. 1991년중에 相續 또는 遺贈에 의해서 財産을 取得한 者에 대해서는 1992년은 6월 30日까지 申告 또는 處理(更正, 決定 등)에 의한 課稅事績을 申告書·決議書 등에 의하여 작성했다.

2. 遺産에 관한 基礎控除額欄의 人員은 被相續人의 數이다.

3. 相續人數欄의 「實」은 實人員을 나타낸다.

資料: 日本 國稅廳(編), 「平成3年度版 國稅廳統計年報書」, 1993. 5.

〈附表 8〉日本 相續稅의 段階別 分布(1991)

(單位: 億圓, 名)

	被 相續人數	課稅 價格	課稅價格에 대한 贈與財產價額	納稅額	法定 相續人數
5,000萬圓 이하	107	52	—	—	97
5,000萬圓~1億圓 이하	14,024	11,329	31	253	41,443
1億圓~2億圓 이하	20,949	29,355	108	2,083	81,576
2億圓~3億圓 이하	7,992	19,412	71	2,504	33,075
3億圓~5億圓 이하	6,105	23,340	80	4,336	25,984
5億圓~7億圓 이하	2,685	15,731	69	3,663	11,825
7億圓~10億圓 이하	1,799	14,941	51	3,990	8,102
10億圓 이상	2,892	63,845	323	22,818	13,422
合 計	56,553	178,005	733	39,648	215,524

註: 1991년중에 相續, 遺贈으로 財産을 取得한 사람을 대상으로 1992年 6月 30日 까지 提出된 「申告書(修正申告書 제외)」를 基礎로 작성했다.

資料: 日本 國稅廳(編), 『平成3年度版 國稅廳統計年報書』, 1993. 5.

〈附表 9〉日本의 相續財産 種類別 比率

(單位: 億圓, 名, %)

	1990		1991	
	被相續人數	取得財産價額	被相續人數	取得財産價額
土地	46,757	108,950(71.14)	54,504	142,087(73.29)
家屋·構築物	42,810	6,911( 4.51)	49,982	8,964( 4.62)
事業(農業)用 財産	9,364	667( 0.44)	10,477	801( 0.41)
有價證券	33,022	15,533(10.16)	37,277	16,805( 8.67)
現金·預金 等	47,043	12,587( 8.22)	54,816	15,039( 7.76)
家庭用 財産	36,740	185( 0.12)	42,179	216( 0.11)
其他 財産	38,266	8,243( 5.38)	43,898	9,965( 5.14)
合 計	48,302	153,076(100)	56,553	193,875(100)

註: 1. 被相續人數는 實際課稅人員을 표시한다.

2. 相續·遺贈財産 取得者를 대상으로 익년 6月 30日 까지 提出된 「申告書(修正申告書 제외)」를 基礎로 작성한다.

3. ( )안은 取得財産價額의 合計額에 대한 比率이다.

資料: 日本 國稅廳(編), 『平成3年度版 國稅廳統計年報書』, 1993. 5.

〈附表 10〉日本の相續・贈與税の基礎控除額推移

(單位：萬円)

	相 續 税	贈 與 税
1958	$150 + (30 \times \text{法定相續人數})$	20
1962	$200 + (50 \times \text{法定相續人數})$	
1964	$250 + (50 \times \text{法定相續人數})$	40
1966	$400 + (80 \times \text{法定相續人數})$ +配偶者控除最高額 200	
1971	$400 + (80 \times \text{法定相續人數})$ +配偶者控除最高額 400	
1973	$600 + (120 \times \text{法定相續人數})$ +配偶者控除最高額 600	
1975	$2,000 + (400 \times \text{法定相續人數})$	60
1978	$4,000 + (800 \times \text{法定相續人數})$	
1992	$4,800 + (950 \times \text{法定相續人數})$	

〈附表 11〉日本 相續稅의 稅額控除 適用狀況

(單位：億円, 名)

	課稅相續人數 (被相續人數)	配偶者控除		未成年者控除		障礙者控除	
		適用數	控除額	適用數	控除額	適用數	控除額
1984	121,157 (43,012)	26,495	3,907	7,106	13	1,820	12
1985	134,475 (48,111)	29,633	4,696	7,460	16	1,941	12
1986	143,856 (51,817)	31,453	5,134	7,928	25	2,225	15
1987	165,410 (59,008)	35,674	6,753	8,564	23	2,478	18
1988	107,253 (36,468)	23,285	9,349	5,158	26	2,205	18
1989	124,160 (41,655)	24,098	10,398	4,130	16	1,933	24
1990	142,286 (48,287)	28,217	11,738	4,277	21	2,166	27

資料：日本 國稅廳(編), 『平成3年度版 國稅廳統計年報書』, 1993. 5.

〈附表 12〉日本의 年度別 贈與稅 課稅現況

(單位：億円, 名)

	人 員 <sup>1)</sup>	財 產 價 額 <sup>2)</sup>	納 付 稅 額
1989	527,756	21,401	2,926
1990	583,693	25,684	3,430
1991	573,155	20,593	2,392

註：1) 實際課稅人員.

2) 100萬円 이상인 경우 標本調査에 基礎하여 推定計算한 數值이다.

1. 1991年中 財産을 贈與받은 者를 대상으로 1992年 6月 30日까지 提出된 「申告書(修正分 제외)」를 基礎로 작성했다.

資料：日本 國稅廳(編), 『平成3年度版 國稅廳統計年報書』, 1993. 5.

〈附表 13〉 日本의 贈與稅 課稅現況(1991)

(單位: 億円, 名)

	人 員 <sup>1)</sup>	金 額 <sup>2)</sup>
取得財產價額( 당해분)	573,155	20,593
配偶者控除額	41,748	6,923
基礎控除額	573,155	3,439
基礎控除 後의 課稅價額	538,997	10,229
贈與稅額	521,445	2,883
外國稅額控除	-	-
差額納付稅額	521,445	2,883
納稅猶豫額	6,386	491
納付稅額	515,644	2,392
災害減免法上 免除稅額	-	-
住宅取得資金의 贈與稅額	28,863	977

註: 1) 實際課稅人員.

2) 100萬円 이상인 경우 標本調査에 基礎하여 推定計算한 數值이다.

1. 1991年中 財産을 贈與받은 者를 대상으로 1992年 6月 30日 까지 提出된 『申告書(修正分 제외)』를 基礎로 작성했다.

資料: 日本 國稅廳(編), 『平成3年度版 國稅廳統計年報書』, 1993. 5.

〈附表 14〉 獨逸의 相續稅收의 關聯 指標

	1987	1988	1989	1990	1991
1. 總 GNP	1,115.1	1,199.6	1,193.8	1,503.3	1,575.9
1人當 GNP	18,253	19,531	19,257	23,775	24,577
2. 總稅收	755,948	789,804	850,754	889,442	1,096,608
相續·贈與稅收	2,238	2,402	2,082	3,022	2,636
3. 總稅收 對比 相續· 贈與稅 比率(%)	0.30	0.30	0.24	0.34	0.24

註: 1. GNP는 10億달러, 1人當 GNP는 달러.

2. 稅收는 백만마르크.

資料: 日本銀行國際局, 『外國經濟統計年報(1992年版)』, 1993. 12.

〈附表 15〉 프랑스의 相續稅收와 關聯 指標

	1987	1988	1989	1990	1991
1. 總 GNP	887.9	962.8	965.4	1,192.2	1,200.1
1人當 GNP	15,960	17,229	17,189	21,016	21,188
2. 總稅收	2,372,502	2,514,383	2,691,968	2,846,805	2,979,093
相續·贈與稅收	18,108	21,815	23,443	27,053	43,551
3. 總稅收 對比 相續· 贈與稅 比率(%)	0.76	0.87	0.87	0.95	1.56

註：1. GNP는 10億달러, 1人當 GNP는 달러.

2. 稅收는 백만프랑.

資料：日本銀行國際局, 『外國經濟統計年報(1992年版)』, 1993. 12.